

研究報告 45
1982. 12

漁民後繼者 育成事業에 관한 연구

朱 尤 一(責任研究員)

辛 英 泰(研 究 員)

玉 永 秀(研 究 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머 리 말

우리 나라의 漁業人口는 1967년을 고비로 그 절대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老齡者 중심으로 漁業從事者가 구성되어 있는 취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水産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1981년에 「農漁民後繼者育成基金法」을 制定하고, 의욕있고 능력 있는 漁村의 靑少年들을 대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러나 本事業은 시행 초기에 있는 관계로 다소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아직은 크게 노출되지는 않았으나 언젠가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本研究에서는 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의 現況을 살펴 보고, 漁民後繼者 當事者, 水産系學校 學生, 一般漁民들이 本事業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분석한 후, 앞으로의 事業推進方向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本研究는 水産開發研究室의 研究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研究結果는 研究擔當者의 見解이며 當研究院의 公式見解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1982. 11.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甫 炫

빈 면

目 次

第 1 章 序 論

1. 問題의 提起..... 1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2

第 2 章 漁業就業構造의 變動

1. 漁業人口의 減少 3
2. 漁家의 農漁業 兼業化 5
3. 漁業의 家族的 自營化 7
4. 漁業從事者의 老齡化 9
5. 漁業從事者 學歷의 相對的 劣勢..... 11

第 3 章 漁民後繼者 育成事業 이전의 後繼者育成을 위한 活動

1. 學敎敎育 14
2. 社會敎育 21

第 4 章 漁民後繼者 育成事業

1. 沿 革 25
2. 事業推進體系 26
3. 事業實施를 위한 基本事項 26
4. 事業實績 34

第 5 章 設問調査를 통하여 살펴 본 漁民後繼者 育成事業에 대한 反應

1. 調査 및 分析의 概要..... 42
2. 調査對象者들의 一般事項..... 45

3. 漁民後繼者 育成事業에 대한 反應..... 52

第 6 章 앞으로의 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의 推進 方向

1. 基本推進方向 58
2. 事業內容의 改善方向..... 60
3. 事業推進 與件의 造成 64
4. 기타 漁民後繼者 育成活動의 推進方向..... 67

附 錄..... 70

參考文獻..... 82

表目次

第 2 章

表 2-1	市道別 漁業事業體數와 漁業人口 變動	4
表 2-2	漁業 形態別 專兼業別 漁家人口	6
表 2-3	漁業 形態別 專兼業別 漁家口 比率	6
表 2-4	年齡 階層別 漁業經營 從事者 數	10
表 2-5	1980 年 學歷別 漁業 經營家口의 14 世 以上 家口員數 및 漁業 從事者 數	12

第 3 章

表 3-1	水產系學校 現況(1981 年)	15
表 3-2	水產系學校 學科別 在學生數	18
表 3-3	水產系學校 卒業生 狀況	19
表 3-4	水產系學校 卒業生의 就業狀況	20
表 3-5	水產系學校 學生들의 學校教育에 대한 問題點 및 建議事項	21
表 3-6	沿岸地域 새마을 靑少年會 會員數	22

第 4 章

表 4-1	漁民後繼者 育成事業 標準設計(案)	28
表 4-2	漁民後繼者의 年齡 分布	35
表 4-3	漁民後繼者의 學歷 狀況(1982 年)	35
表 4-4	個人 및 團體 漁民後繼者 選定	36
表 4-5	漁業別 地域別 漁民後繼者 選定 및 支援實績	38
表 4-6	1981 年 漁民後繼者 專門技術教育 實施場所 및 日程	40

表 4 - 7	1982 年 漁民後繼者 專門技術教育 實施場所 및 日程	40
表 4 - 8	漁民後繼者 事業推進 狀況	40
表 4 - 9	1981 年 漁民後繼者 事業成果	41

第 5 章

表 5 - 1	設問調查對象者の 市道別 分布	44
表 5 - 2	水産系學校學生의 住所와 所屬學校 位置와의 關係	45
表 5 - 3	漁業 從事年代 比較	46
表 5 - 4	自己 집안이 마을에서의 상대적인 經濟 水準	47
表 5 - 5	우리 나라 水産業의 장래에 대한 展望	48
表 5 - 6	장래에 하고 싶은 漁業의 種類	50
表 5 - 7	장래에 하고 싶은 養殖業種	51
表 5 - 8	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의 規模 확대에 대한 意見	52
表 5 - 9	漁民後繼者의 年齡制限	53
表 5 - 10	融資金 償還期間	55
表 5 - 11	融資金의 일률적 償還에 대한 意見	55
表 5 - 12	水産系學校 卒業生의 後繼者 선정 우선권 부여	57

圖目次

第 2 章

- 그림 2 - 1 年齡 階層別 漁業經營 從事者 比率變化 11
- 그림 2 - 2 1980年 漁業 經營者 家口의 14歲以上 家口員과
漁業從事者의 學歷分布 12

第 3 章

- 그림 3 - 1 沿岸地域 새마을 靑少年會 會員의 家口別 職業 分布..... 23

第 4 章

- 그림 4 - 1 漁民後繼者 育成事業 推進體係 27

第 5 章

- 그림 5 - 1 設問調查對象者의 學歷分布 46

빈 면

第1章

序 論

1. 問題의 提起

그동안 産業化, 都市化가 진전됨에 따라 農業에서와 마찬가지로 漁業에 있어서도 많은 勞動力이 도시로 유출됨으로써 현재 勞動力이 부족하게 되고 그 構成이 취약해져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물론 漁村을 떠나는 자 개인들로서는 더욱 나은 文化生活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所得을 올릴 수도 있으므로 도시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욕구이며, 國家 전체로 보아서도 生産性이 낮은 제 1차 産業에서 生産性이 높은 제 2차 및 제 3차 産業으로 勞動力이 이동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漁業勞動力의 減少, 漁業勞動力 構成의 취약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負의 效果 이상으로 漁業生産性이 증가할 때만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漁業資源 상태, 漁業技術 수준 및 漁場利用 실태 등을 고려해 볼 때 漁業生産性의 向上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 되고있는 漁具漁法의 개량, 機械化 또는 省力化, 經營規模의 확대를 통한 漁業生産性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특히 漁業勞動力 構成에 있어 老齡化경향이 강해짐으로써 더욱 그러하다.

이와 같이 볼 때 금후 漁業生産性을 향상시켜 점차 증가하게 될 水産物의 需要를 충족시키고 漁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靑少

年들을 漁民後繼者로 육성하여 漁業에 종사케 하는 것이 중심과제가 된다. 물론 지금까지는 水産系 學校의 운영 등 漁民後繼者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최근(1981年) 정부의 政策事業으로서 漁業에 종사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靑少年들을 대상으로 事業資金을 지원해 주는 「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方案은 다른 어떤 방안보다 적극적이며 직접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우리 나라의 漁業人口, 就業構成 및 政策事業 實施 이전의 漁民後繼者 育成活動으로서의 學校教育과 社會教育을 살펴보고 나서 현행 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의 現況, 問題點 및 앞으로의 事業推進方向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가. 研究의 範圍

本研究에서는 현재 政策事業으로 실시 중인 「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을 중심으로 하고 그 이외의 方案으로서 學校教育 및 社會教育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나. 研究方法

· 文獻調査로는 農民後繼者育成에 관한 기존의 報告書 및 漁民後繼者 育成事業 關係機關의 資料를 많이 참고하였다.

· 現地探問調査는 경남, 전남지방의 漁民後繼者 및 關係機關을 방문, 資料를 수집하였다.

· 設問調査는 一般漁民(주로 漁村契長), 1981년 및 '82年 漁民後繼者, 水産系 學校 學生들에게 실시한 결과 응답한 總 567명(一般漁民 100명, 漁民後繼者 185명, 水産系 學校 學生 282명)의 응답결과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第2章

漁業就業構造의 變動

우리 나라의 漁業就業構造는 1967년을 정점으로 오늘날까지 계속하여 量的으로 減少傾向을, 質的인 면에서는 兼業化, 自營化, 老齡化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經濟發展에 따른 産業再編成의 필연적인 결과일지도 모른다. 農業人口도 漁業에서와 마찬가지로 1967년을 정점으로 계속 量的, 質的인 면에서 漁業의 패턴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日本에서도 1953년 漁業就業者가 79만명을 피크로, 高度經濟成長期를 통해 감소를 계속하여 1978년 日本 제 6차 漁業센서스에서는 48만명으로 漁業就業者가 줄어든 것과 같은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우리 나라 漁業就業 構造의 變化를 좀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 주로 1970년에 실시한 제 1차 總漁業調査(漁業센서스)와 1980년에 실시한 제 2차 總漁業調査 結果 資料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漁業人口의 減少

우리 나라 漁業人口(漁業家口員數)는 1967년의 147만 7천명을 정점으로, 그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0년 제 1차 總漁業調査 때의 漁業人口는 116만 5천명이었고, 1980년 제 2차 總漁業調

査에서는 84만4천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과거 10년간 年率 3.2%의 減少率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量的 減少現狀은 漁業人口에서 보다는 低率이나, 漁業事業體數, 漁業家口數, 漁業從事者數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즉 漁業事業體數는 1970년 전국적으로 14만9,500개로, 이 중 共同事業體나 會社 등은 386개뿐이고, 나머지 99.7%인 14만9,100개가 個人事業體이었다. 1980년에 와서는 共同, 會社, 團體 등의 漁業事業體는 1,132개로 늘었으나, 個人事業體가 1970년에 비해 1만5천개나 줄어, 總事業體數는 13만5,200개로 되었다. 이는 年 1.0%의 감소율에 해당한다. 總事業體 중 개인사업체는 99.2%인 13만4,100개로 나타나 있다. 사업체는 個人漁家事業體가 많은 全南과 慶南에 과반수 이상이 돌려있으며 서울에도 水産會社 형태로 1980년 현재 64개의 사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國 漁業家口數는 1970년 19만4,600호였다. 이것이 年率 2.1%씩 減少하여 1980년에는 15만6,900호

表 2-1 市道別 漁業事業體數와 漁業人口 變動

單位 ; 個, 名

	事業體數		漁業家口數		漁業家口員數		漁業從事者數	
	1970	1980	1970	1980	1970	1980	1970	1980
서울	41	64	-	-	-	-	-	-
釜山	1,589	2,197	2,995	3,010	16,009	15,571	3,507	4,002
京畿	9,144	8,545	12,207	9,161	69,365	44,085	21,679	16,078
江原	19,027	12,338	19,114	12,481	106,673	62,864	22,299	14,409
忠南	10,557	13,496	12,069	13,800	75,083	75,457	26,149	36,826
全北	4,298	3,886	6,561	4,890	39,707	25,573	12,338	10,643
全南	65,020	54,291	75,514	57,283	472,260	322,680	183,944	154,996
慶北	8,241	11,317	17,180	15,383	99,293	77,057	24,755	20,215
慶南	16,698	20,323	32,865	30,871	201,612	171,597	48,989	53,672
濟州	14,878	8,784	16,096	10,055	85,230	49,300	23,985	12,275
全國	149,493	135,241	194,601	156,934	1165232	844,184	367,645	338,666

資料 : 水産廳, 1970 第1次 總漁業調查 報告, 1972

農水産部, 1980 第2次 總漁業調查 報告, 1982

로 되었는데 이중 全南이 36.5%인 5만 7,300 호이고, 慶南이 19.7%인 3만 900 호로 이 兩道가 우리나라 全漁家の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全國 平均値로 보아 1970년에는 漁家口當 家口員이 5.99名이었는데, 이것이 1980년에 들어와 5.38名으로 漁家口에서도 核家族化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漁業從事者數는 1970년에 36만 7,600명이었는데, 여기에는 遠洋乘船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從事者數도 지난 10년간 年率 0.8%씩 감소하여 1980년에는 33만 8,700명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遠洋乘船員 1만 5,550명을 포함한 수치이다. 漁業從事者數도 全南이 全體의 45.8%인 15만 5천명, 그리고 慶南이 15.8%인 5만 3,700명을 포용하고 있으며, 遠洋乘船員은 全漁業從事者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2. 漁家の 農漁業 兼業化

漁家の 所得源別로 보아 漁業所得 이외에는 다른 所得源이 없는 漁家を 專業漁家라 하고, 다른 所得源이 있는 漁家を 兼業漁家라 한다. 兼業漁家は 다시 둘로 나뉘어 총소득의 50% 이상을 漁業에서 얻은 漁家を 제 1종 兼業漁家라 하고, 총소득의 50% 미만을 漁業에서 얻고, 나머지 50% 이상을 다른 분야에서 얻은 漁家を 제 2종 兼業漁家라 정의한다.

〈表 2-2〉에는 보는 바와 같이, 1970년 總漁家 호수는 19만 4,600 호였다. 이중 專業漁家が 3만 8천호였고, 제 1종 兼業漁家が 7만 4,200 호, 그리고 제 2종 兼業漁家は 8만 2,400 호였다. 이것이 1980년에 와서는 總漁家 호수는 15만 6,900 호로 19.4%나 줄었다. 이는 제 1종 兼業漁家が 8.7%나 증가한 8만 600 호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專業漁家が 29.3% 감소한 2만 6,800 호로, 그리고 제 2종 兼業漁家は 40.0%나 대폭 감소한 4만 9,500 호로 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漁家の 감소를 漁業經營者 및 雇傭者 가구로 나뉘어 볼 때는 漁業經營者 가구도 물론 감소했으나, 漁業雇傭者 가구가 보다 큰 폭으로 감소

表 2-2

漁業形態別 専業別 漁家口数

單位：戶

		漁業經營者家口				小計	漁業 雇備者 家口	總計
		漁船 非使用	無動 力船	動力船	淺海 養殖			
1970	專業	10,857	4,670	3,921	3,291	22,739	15,238	37,977
	1種兼業	20,780	9,756	4,821	22,233	57,590	16,604	74,194
	2種兼業	42,987	5,515	763	19,513	68,778	13,652	82,430
	總計	74,624	19,941	9,505	45,037	149,107	45,494	194,601
1980	專業	7,808	3,215	6,001	3,789	20,813	6,026	26,839
	1種兼業	17,331	7,494	9,968	33,108	67,901	12,740	80,641
	2種兼業	21,224	3,628	1,538	19,005	45,395	4,059	49,454
	總計	46,363	14,337	17,507	55,902	134,109	22,825	156,934

資料：水産廳，1970 第1次 總漁業調查報告

農水産部，1980 第2次 總漁業調查報告

表 2-3

漁業形態別 専業別 漁家口比率

單位：%

		漁業經營者家口				小計	漁業 雇備者 家口	總計
		漁船 非使用	無動 力船	動力船	淺海 養殖			
1970	專業	14.5	23.4	41.3	7.3	15.3	33.5	19.5
	1種兼業	27.8	48.9	50.7	49.4	38.6	36.5	38.1
	2種兼業	57.6	27.7	8.0	43.3	46.1	30.0	42.4
	總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80	專業	16.8	22.4	34.3	6.8	15.5	26.4	17.1
	1種兼業	37.4	52.3	56.9	59.2	50.6	55.8	51.4
	2種兼業	45.8	25.3	8.8	34.0	33.8	17.8	31.5
	總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70	專業	28.6	12.3	10.3	8.7	59.9	40.1	100.0
	1種兼業	28.0	13.1	6.5	30.0	77.6	22.4	100.0
	2種兼業	52.1	6.7	0.9	23.7	83.4	16.6	100.0
	總計	38.4	10.2	4.9	23.1	76.6	23.4	100.0
1980	專業	29.1	12.0	22.4	14.1	77.5	22.5	100.0
	1種兼業	21.5	9.3	12.4	41.1	84.2	15.8	100.0
	2種兼業	42.9	7.3	3.1	38.4	91.8	8.2	100.0
	總計	29.5	9.1	11.2	35.6	85.5	14.5	100.0

資料：水産廳，1970 第1次 總漁業調查報告 1972

農水産部，1980 第2次 總漁業調查報告 1982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 1종 兼業漁家が 증가한 것은 漁業經營者 가구, 그중에서 특히 動力船使用 및 淺海養殖業 漁家が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表 2-3〉의 上段은 10년간의 專兼業別 漁家戶數의 構成比 變動을 알아보기 위해 계산한 表이다. 1970년에는 總漁家 戶數에 대한 專業漁家 戶수가 19.5%, 제 1종 兼業漁家は 38.1%이고 제 2종 兼業漁家が 42.4%로, 제 2종 兼業漁家が 가장 많았다.

그러나 1980년에는 專業漁家が 17.1%, 제 1종 兼業漁家が 51.4%, 그리고 제 2종 兼業漁家は 31.5%로, 제 1종 兼業漁家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專兼業別 構成比의 지난 10년간 변화로 보아, 우리 나라 漁家は 漁業을 家計의 主所得源으로 하되, 副業的 兼業 所得源도 갖는 제 1종 兼業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 나라 漁家 單位의 漁業은 專業으로 하기에는 家計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副收入源 的 兼業을 바라게 되고, 그렇다고 어업 자체를 副收入源 的 兼業으로 하기에는 漁業經營이 어려우므로, 과반수 이상의 漁家が 어업을 主收入源으로 삼으면서, 여가가 나는데로 農業 등 副收入源을 갖게되는 경향을 띠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3. 漁業의 家族的 自營化

漁家を 自營的 漁業經營者 家口와 被雇傭的 漁業雇傭者 가구로 나누어 볼 때, 우리 나라는 經營者家口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우리 나라의 漁業, 특히 漁業人口의 다수를 차지하는 沿岸漁業이나 淺海養殖業의 소규모 적 特性을 감안할때 당연할지도 모른다. 즉 漁業經營의 수단인 漁船이나 漁場을 소유하고, 漁業 또는 養殖業을 개인 단독으로 1년간에 1개월 이상 경영한 가구이면 물론, 漁業經營者 가구이나, 漁船이나 漁場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個人經營體가 된다.

(1) 自己의 책임하에 빌린 漁船, 漁網, 漁具를 사용하여 漁業을 경영하는 家口.

(2) 自己 所有의 漁網, 漁具를 가지고, 他人의 漁船에 乘船하여 作業하 되, 漁獲物을 자기의 책임하에 처리하는 경우.

(3) 共同漁業權은 地區別, 또는 業種別水協의 名의로 되어 있으나, 실 제는 개인이 經營하는 경우.

이와 같은 漁家도 漁業經營者 가구로 分類되므로 나머지 순수 被備的 漁業雇傭者 가구는 얼마되지 않는다.

〈表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 總漁家は 19만 4,600호인데, 이 중 漁業經營者 가구는 14만 9,100호이고, 나머지 4만 5,500호만이 漁業雇傭者 가구였다. 漁業經營者 가구를 다시 세분하면 漁船非使用 漁家 가 7만 4,600호, 無動力船 使用 漁家가 1만 9,900호, 動力船 使用 漁家가 9,500호, 그리고 淺海養殖業 漁家가 4만 5천호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것이 1980년에 와서는 漁業經營者 가구는 1970년에 비해 10.1% 감소한 13만 4,100호로 되었으나, 漁業雇傭者 가구는 무려 49.8%나 감소한 2만 2,800호로 되어, 總漁家 감소율을 19.4%나 되게 하였다. 이 에 따라 1970년 經營者 가구당 雇傭者家口의 비율은 0.31였으나, 1980년에는 0.17로 크게 줄었다. 이는 1호의 經營者家口가 0.17호의 完全 雇傭者 家口만을 고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대부분의 經營者 가구는 가족 勞動에 의존하는 自營的 漁業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 漁業經營者 가구를 세분하여 보면, 漁船非使用 漁家は 1970년에 비해 37.9% 감소한 4만 6,400호, 無動力船 漁家は 28.1% 감소한 1만 4,300호로 되었으나, 動力船 漁家は 84.2%나 증가한 1만 7,500호로, 그리고 淺海養殖 漁家は 24.1% 증가한 5만 5,900호로 되었다.

이와 같은 漁家口의 변화를 〈表 2-3〉의 下段에서 살펴보면, 1970년 總漁家の 76.6%가 漁業經營者 가구이고, 나머지 23.4%가 漁業雇傭者 가구였는데, 80년에 이르러서는 經營者 가구 比率이 85.5%로 증가한 반면, 雇傭者 가구는 14.5%로 감소하였다. 經營者 가구 구성비의 증가는 위의 가구수에서 본 바와 같이 動力船 사용 및 淺海養殖業 漁家の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 業種의 漁家 구성비가 總漁家에 대하여 1970년 28.0%이던 것이, 1980년 46.8%로 뛰어 올라, 기왕의 漁業

近代化를 잘 말해 주고 있다 하겠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漁家漁業의 전반적 추세는 漁家數의 감소가 물론 보이나, 經營者 가구보다는 雇傭者 가구의 감소폭이 큼으로써, 타인을 고용한 漁業形態보다는 經營者家口化, 다시 말하면 漁家漁業은 家族的 自營化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영자 가구의 감소도 부분적으로는 動力船使用 및 淺海養殖業 같은 近代的 漁業을 영위하는 漁家は 증가하고, 漁船非使用 採取形態의 漁業이나 無動力船 使用 漁業 같은 前近代的 漁業의 漁家が 감소하는 패턴을 밝고 있다.

4. 漁業從事者の 老齡化

1970년 總漁業從事者數는 36만 7,600명으로 이중 漁業經營者가 83.7%인 30만 7,600명이고, 漁業雇傭者는 16.3%인 6만명이었다. 1980년에는 總漁業從事者가 33만 8,700명이었는데, 이중 漁業經營者는 87.1%인 29만 4,900명이고, 나머지 12.9%인 4만 3,700명이 漁業雇傭者였다. 그러나 1980년 統計에는 漁業雇傭者에 해당하는 遠洋乘船員 1만 5,600명이 포함되어 있다. 1970년에도 우리 나라에는 遠洋漁業이 존재했으므로 遠洋乘船員이 있었을 것이나, 당시의 漁業센서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1980년 漁業從事者 統計를 1970년 資料와 대등하게 비교하려면, 遠洋乘船員을 제외한 漁業從事者 統計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계산한 1980년 沿近海漁業만의 종사자수는 총 32만 3,100명이고, 이중 經營者가 91.3%인 29만 4,900명, 그리고 雇傭者는 8.7%인 2만 8,200명이 된다. 遠洋乘船員을 제외한 1980년 漁業從事者數를 1970년 統計와 비교하면 經營者數에서는 단지 4.1%가 감소했을 뿐이나, 雇傭者數에서 53.0%나 대폭 감소하여 總從事者數에서 12.1%가 감소하게 되었다.

〈表 2-4〉는 年齡群別 漁業經營 종사자수를 나타내고 있다. 漁業센서스 資料에는 雇傭從事者에 대한 年齡資料가 없어 經營從事者의 資料만 이용하

表 2 - 4

年齡階層別 漁業經營 従事者數

單位：名

		14 ~ 19세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 以上	總 計
1970	男	19,696	37,429	46,451	36,536	23,835	10,310	174,257
	女	17,765	28,151	36,782	28,419	15,167	7,086	133,370
	合 計	37,461	65,580	83,233	64,955	39,002	17,396	307,627
	(%)	12.2	21.3	27.1	21.1	12.7	5.7	100.0
1980	男	12,453	34,528	33,969	43,867	28,212	15,274	168,303
	女	9,765	20,461	28,006	34,238	21,475	12,680	126,625
	合 計	22,218	54,989	61,975	78,105	49,687	27,954	294,928
	(%)	7.5	18.6	21.0	26.5	16.8	9.5	100.0

資料：水産廳，1970 第 1 次 總漁業 調査報告，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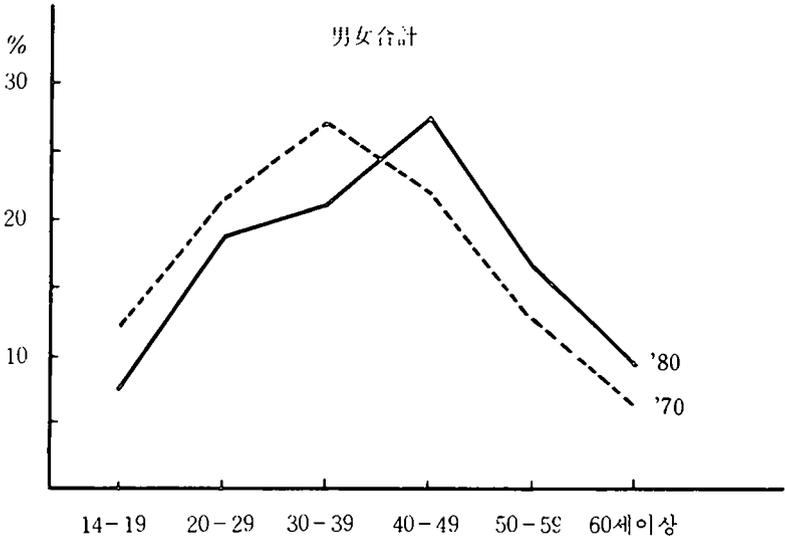
農水産部，1980 第 2 次 總漁業 調査報告，1982

였다. 그러나 雇傭従事者數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總従事者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으므로 전체 동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며, 또한 우리의 관심은 經營従事者에 국한된 것이므로, 經營従事者 資料만을 이용하였다.

表에 따르면 1970년 總漁業經營従事者의 56.6%인 17만 4,300 명이 남자이고, 여자는 43.4%인 13만 3,400 명이였다. 그리고 1980년에는 남자가 57.1%인 16만 8,300 명이고, 여자는 42.9%인 12만 6,600 명이였다. 1970년에서 1980년까지의 男女減少率을 보면 男子는 3.4% 감소했으나 여자는 5.1% 감소함으로써 여자의 감소폭이 컸다. 이는 漁業이 近代化됨에 따라 고도의 기술을 요함과 동시에 힘든 작업이므로 漁業従事者가 점차 男性化하고 있음을 뜻한다.

한편 1970년 年齡階層別 漁業經營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모드(mode)는 30 ~ 39세 階層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男女 모두에서 그렇다. 이것이 1980년에는 모드가 40 ~ 49세 階層으로 이동하였다. 여기에서도 男女 모두 같은 현상이므로 總經營従事者에 대한 年齡階層別 종사자 비율을 <그림 2 - 1>에 나타내었다. 1970년의 年齡그래프와 1980년 것이 모양은 동일하나 단지 한칸씩 右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漁業従事者가

그림 2-1 年齡階層別 漁業經營 從事者 比率變化



老齡化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5. 漁業從事者 學歷의 相對的 劣勢

漁家所得이 都市勤勞者 가구는 물론 農家の 所得보다 낮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80년의 경우 漁家平均所得은 304만 2천원으로 이는 農家所得의 83%, 都市勤勞者 家計所得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漁村의 地理的 不利에 따른 教育施設의 미비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漁家口員의 教育水準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한 資料를 1980년 漁業센서스는 처음 자세히 밝히고 있다.

〈表 2-5〉는 1980년 漁業經營 가구의 14세 이상 家口員과 어업종사자의 學歷別 分布를 나타내고 있다. 즉 1980년 漁業經營者 가구원 총 72만 5,300명 중에서 14세 미만 가구원 26만 3,500명을 제외한 46만 1,800명에 대한 資料와 漁業經營從事者 資料를 男女別, 學歷別로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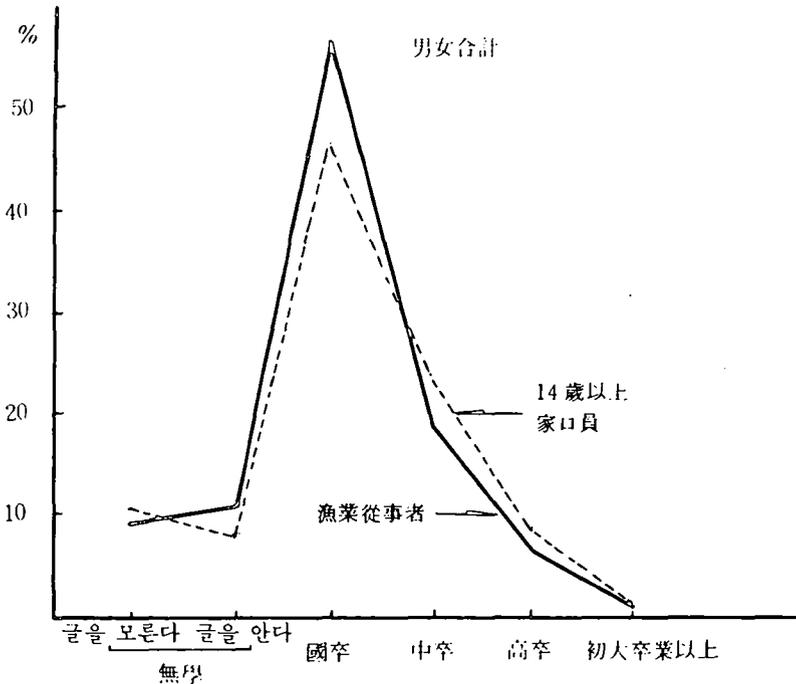
表 2-5 1980年 學歷別 漁業經營家口의 14세 이상 家口員數 및 漁業從事者數

單位：名

		無 學		國 卒	中 卒	高 卒	初級大 卒以上	總 計
		글을 모른다	글을 안다					
14세以上 家口員數	男	9,471	17,009	110,309	67,312	30,337	2,905	237,343
	女	39,544	23,001	113,155	36,874	11,377	529	224,480
	合計	49,015	40,010	223,464	104,186	41,714	3,434	461,823
	%	10.6	8.7	48.4	22.6	9.0	0.7	100.0
漁 業 從事者數	男	6,918	14,145	92,831	39,056	13,923	1,430	168,303
	女	21,570	16,665	74,066	12,079	2,189	56	126,625
	合計	28,488	30,810	166,897	51,135	16,112	1,486	294,928
	%	9.7	10.4	56.6	17.3	5.5	0.5	100.0

資料：農水産部，1980 第2次 總漁業 調査報告，1982

그림 2-2 1980년 漁業經營家口의 14세 이상 家口員과 漁業從事者의 學歷分布



家口員과 종사자 모두 남자의 學歷이 여자보다 월등히 높으나, 모드는 國民學校 卒業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文盲도 전반적으로 10% 수준이나 된다.

家口員과 종사자의 學歷을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2-2>를 작성하였다. 이로부터 가구원의 學歷이 종사자의 學歷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高卒 이상 學歷所有者 比率이 가구원에서는 9.8%이나, 종사자에서는 6.0%에 불과하다. 특히 男子의 경우는 高卒 이상이 家口員에서는 14.0%이나, 從事者에서는 9.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보아 漁業經營家口의 가구원중 學歷이 높으면 漁業에 종사하지 않고 漁業 이외의 분야로 빠지는 경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漁業從事者의 學歷 수준은 漁村실정에 따라 전반적으로 낮음은 물론 家口員의 수준보다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第3章

漁民後繼者 育成事業 이전의 後繼者育成을 위한 活動

1. 學校教育

가. 學科 및 在學生 現況

漁民後繼者를 육성하고자 하는 活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學校教育을 통해 後繼者를 육성하는 것이다.

1981년말 현재 우리 나라의 水産系學校現況을 보면 水産大學이 1개 水産관계 學科를 두고 있는 定規大學이 1개, 水産專門大學이 3개, 수산관계 學科를 두고 있는 專門大學이 1개, 水産高等學校가 8개, 水産관계 學科를 두고 있는 高等學校가 2개로서 水産관계 學科를 두고 있는 學校는 모두 16개교이다. 이는 <表 3-1>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전체 在學生數는 1981년말 현재 13,258명이다. 이들 전체 학교의 학과별 在學生數를 보면, 漁業 또는 漁撈學科는 전체 16개 학교에 전부 설치하고 있는데 1981년말 현재 총 3,276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어 전체 在學生數의 24.7%를 차지하고 있고, 機關學科는 14개 학교에서 설치하고 있으며 在學生數는 3,196명으로서 전체 在學生數의 24.1%를 차지하고

表 3-1 水 產 系 學 校 現 況 ('81 年)

單位：名

學 校 名	設 置 學 科		在 學 生 數	位 置 道
	系 列	學 科 名		
釜 山 水 產 大 學	水 產 學	漁 業 學 科	129	釜 山 市
		養 殖 學 科	75	
		機 關 學 科	111	
		水 產 教 育 學 科	130	
		教 養 課 程	273	
	工 學	食 品 工 學 科	115	
		環 境 工 學 科	153	
		冷 凍 工 學 科	156	
		船 用 機 械 工 學 科	93	
		通 信 工 學 科	44	
		海 洋 工 學 科	60	
		教 養 課 程	328	
	社 會 科 學	水 產 經 營 學 科	247	
		貿 易 學 科	26	
		資 源 經 濟 學 科	16	
		教 養 課 程	233	
	理 學	資 源 生 產 學 科	86	
		應 用 數 學 科	11	
	小 計			
濟 州 大 學	水 產 學 部	漁 撈 科	106	濟 州 道
		機 關 科	47	
		增 殖 科	66	
		食 品 工 學 科	99	
		海 洋 資 源 科	42	
		通 信 科	65	
小 計			425	
群 山 水 產 專 門 大 學		漁 業 科	168	全 羅 北 道
		機 關 科	153	
		加 工 科	131	
		增 殖 科	131	
		海 洋 土 木 科	92	

(表 3 - 1 계속)

學校名	設置學科			在學生數	位置道
	系列	學科名			
		通信科		115	
小計				790	
統營水產 專門大學		漁業科	164	慶尙南道	
		機關科	167		
		加工科	151		
		增殖科	137		
		通信科	128		
	經營科	75			
小計				822	
麗水水產 專門大學		漁業科	139	全羅南道	
		機關科	150		
		加工科	153		
		增殖科	147		
		經營科	64		
		通信科	81		
	海洋土木科	56			
小計				790	
浦項實業 專門大學		漁業科	74	慶尙北道	
		機關科	77		
		增殖科	93		
小計				244	
京畿水產 高等學校		漁業科	263	京畿道	
		機關科	255		
		加工科	155		
		增殖科	146		
小計				819	
大川水產 高等學校		漁業科	156	忠清南道	
		機關科	162		
		增殖科	170		
		通信科	104		
小計				592	
南海水產 高等學校		漁業科	303	慶尙南道	
		機關科	511		
		增殖科	125		

學校名	設置學科		在學生數	位置道
	系列	學科名		
小計			939	
巨濟水產 高等學校		漁業科	167	慶尙南道
		機關科	172	
		造船科	489	
小計			828	
城山水產 高等學校		漁業科	321	濟州道
		機關科	336	
		加工科	161	
小計			818	
莞島水產 高等學校		漁業科	312	全羅南道
		機關科	331	
		加工科	172	
		增殖科	162	
小計			977	
浦項水產 高等學校		漁業科	331	慶尙北道
		機關科	348	
		加工科	347	
		通信科	238	
小計			1,264	
注文津水產 高等學校		漁業科	316	江原道
		機關科	283	
		加工科	171	
		通信科	281	
小計			1,051	
九龍浦綜合 高等學校		漁業科	167	慶尙北道
小計			167	
鬱陵綜合 高等學校		漁業科	160	慶尙北道
小計			160	
總計			13,258	

資料：韓國水產振興會，水產年鑑，1982 及

莞島水高 學校要覽，南海水高 教育計劃書 1982

있다. 그 다음이 10개 學敎에서 설치하고 있는 加工科로 在學生數는 1, 811 명에 전체의 13.7%를 차지하고 있고 增殖學科는 10개 학교에서 설치하고 있어, 加工學科와 그 설치학과수는 같으나 在學生數는 1,252 명(전체의 9.4%)으로서 加工學科보다는 在學生數가 다소 적다. 通信學科는 8개 學校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그 在學生數는 1,056 명으로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3個 학교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經營學科는 386 명에 2.9%, 기타 學科의 在學生數가 2,281 명으로 전체의 17.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들 水産系 學校의 地域別 分布를 <表 3-2>을 통해서 살펴보면, 부산시를 비롯한 경남 지역이 水産正規大學 1개교, 水産專門大學 1개교, 水産高等學校 2개교 등 도합 4개교가 있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많은 水産系 學校가 분포하고 있다. 그 다음 전라남도가 전문대학 1개교 水産高等學校 1개교가 있는데, 전라남도는 漁民의 數, 生産量등 전국적으로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추어 水産系 學校가 상대적으로 적게 설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에는 濟州大學校 海洋科學大學이 1개, 水産高等學校가 1개 있으며, 경상북도는 水産專門大學은 아니나 水産關係學科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이 1개, 水産高等學校가 1개, 기타 水産關係學科를 설치하고 있는 高等學校가 2개 등 모두 4개교

表 3-2 水産系 學校 學科別 在學生數

學 科 名	設置學校數	在 學 生 數	構 成 比
漁 業 科	16	3, 276 名	24.7 %
機 關 科	14	3, 196	24.1
加 工 科	10	1, 811	13.7
增 殖 科	10	1, 252	9.4
通 信 科	8	1, 056	8.0
經 營 科	3	386	2.9
其 他	—	2, 281	17.2
計	—	13, 258	100.0

- 註：1. 漁業科는 漁撈科와 같음
 2. 機關科에는 釜山水大의 船用機械工學科 包含
 3. 加工科에는 釜山水大의 食品工學科 및 冷凍工學科 包含
 資料：<表 3-1>에서 作成

서 학교수로는 부산, 경남과 함께 가장 많다. 그밖에, 전라북도에는 전문대학 1개, 경기도 및 충청남도과 강원도에 각각 水産高等學校를 1개씩 두고 있는 실정이다.

나. 卒業生 現況

16개 水産系 學校의 1980년까지의 학과별 졸업생 현황을 살펴보면 <表3-3>과 같이 漁業學科가 18,134 명으로서 가장 많고 (전체 졸업생수의 42.9%) 그 다음이 加工科 8,126명(19.2%), 機關科 6,425名(15.2%) 増殖科 6,316명(15.0%), 通信科 1,479名(3.5%), 經營科 963名(2.3%), 기타 學科 855명(2.0%)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들 졸업생 중에서 1980년말 현재까지의 2개 전문대학과 10개 고등학교 전체의 졸업생 취업상황을 살펴보면 <表3-4>와 같다.

즉, 大學을 제외한 水産系 學校 卒業生 중 전문대학 졸업생들은 42.6%가 水産系인 水産會社와 水産公共團體에 취업하였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35.7%가 水産系 직장에 취업함으로써 전문대학 졸업자의 水産系 취업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때 水産系 職場으로서의 水産會社就業는 주로 水産會社에 소속된 어선에 승선함을 의미하며 水産公共團體의 취업은 水産業協同組合내지 水産系 公務員으로 취업함을 의미하고 있다.

表 3 - 3 水産系 學校 卒業生 狀況

學 科 名	卒 業 生 數	構 成 比
漁 業 科	18,134 名	42.9 %
加 工 科	8,126	19.2
機 關 科	6,425	15.2
増 殖 科	6,316	15.0
通 信 科	1,479	3.5
經 營 科	963	2.3
其 他	855	2.0
計	42,298	100.0

資料：韓國水産振興會, 水産年鑑, 1981, 1982에서 作成

表 3-4 水産系 學校 卒業生の 就業狀況

學 校 區 分	專 門 大 學		高 等 學 校	
	就業者數	構 成 比	就業者數	構 成 比
水 産 會 社	1, 887 (名)	36.5 (%)	7, 402 (名)	30.7 (%)
水産公共團體	314	6.1	1, 216	5.0
海 運 會 社	248	4.8	752	3.1
造 船 會 社	40	0.8	636	2.6
官 公 署	300	5.8	1, 789	7.4
教 育 界	106	2.1	234	1.0
金 融 機 關	16	0.3	170	0.7
進學 및 留學	104	2.0	1, 500	6.2
兵 役 義 務	1, 006	19.4	1, 773	7.4
自 營	219	4.2	2, 349	9.7
其 他	931	18.0	6, 311	26.2
計	5, 171	100.0	24, 132	100.0

註：1. 專門大學은 麗水水專과 群山水專, 高等學校는 10個 水産系 高等學校의 合計 임

2. 1980년까지의 累計 임

資料：韓國水産振興會, 水産年鑑, 1981에서 作成

다. 學校教育의 問題點

水産系 學校 教育의 문제點 및 水産系 學校 學生들의 학교에 대한 建議事項을 살펴보기 위하여 學生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토록한 결과 應答者가 많지 않아 전체 의견을 대표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내용을 요약하면 <表 3-5>와 같다. 즉 專門大學과 高等學校 學生들이 모두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이 實習不足이었다. 그 다음으로 專門大學生들은 卒業 후 就業에 대한 불안, 學校授業의 不實을 제시하였고, 高等學校 學生들은 學校授業 不實, 전반적인 學校施設 不實, 卒業 후 就業에 대한 不安感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밖에 獎學金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는 專門大學生들의 경우가 高等學校 學生들보다 더 많이 지적하였다. 한편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그 수는 많지는 않으나 水高生 중 4명이 國內外 水産情報 및 資料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였

表 3-5 水産系學校學生들의 學校教育에 대한 問題點 및 建議事項

問 題 點		建 議 事 項	
內 容	件 數		
	專門大學	高等學校	
實 習 不 足	11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實習時間 擴大, 實習施設 및 機 資材 擴充 ◦ 正規大學 委託實習(水專) ◦ 實習船 確保(水高) ◦ 遠洋實習實施(水高)
學 校 援 業 不 實	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援業充實 ◦ 信念과 긍지 느낄수 있는 教育 ◦ 教授(師)들의 적극적인 援業態度 ◦ 勉學 분위기 造成 ◦ 有名講師의 招請(水專) ◦ 水産 이외의 教科目 擴充(水高)
就業에 대한 不安	11	7	◦ 卒業後 就業保障
獎 學 金 規 模 의 過 少	4	2	◦ 獎學金 擴大支給
전반적인 學校施設 不 實		9	◦ 教室, 體育施設 擴充
水産情報 및 資料 不 足		4	◦ 最新 國內外 水産情報 및 資料 提供
기타	3	6	
計	35	102	

註: 專門大學生 94名, 高等學校學生 188名을 대상으로 調査한 것임
 는데 이는 자기의 專功分野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
 내고 있다.

2. 社會教育

教育을 통한 漁民後繼者 育成方案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學校教育을 통
 한 방안 이외에 社會教育을 통한 방안이 있으며, 社會教育으로서 가장 일
 반적인 것은 현재 농업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새마을 靑少年會를 통한

교육을 들 수 있다. 새마을 靑少年會는 과거의 4H運動을 1979년에 개편한 것으로 우리 나라에는 1947년 3월에 처음 소개되었으며 현재의 조직으로는 각도에 새마을 靑少年會道聯合會, 市郡에 새마을 靑少年會市郡聯合會, 市郡 아래에 邑面 새마을 靑少年會, 里洞 새마을 靑少年會, 특수 새마을 靑少年會를 두고 있다. 한편, 지원체제는 정부지원체제로서 農村振興廳, 各道農村振興院 및 산하 市郡農村指導所와 그 支所를 통해 교육훈련, 과제자금 지원, 장학금 지급, 수행행사 개최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새마을 靑少年後援會, 姊妹結緣, 言論機關 등을 통해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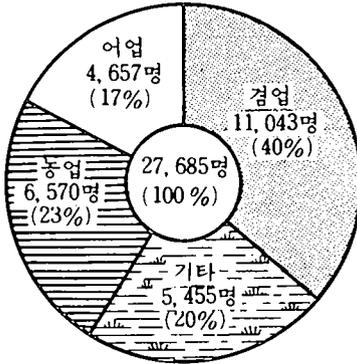
그런데 현재 이러한 새마을 靑少年會는 거의가 農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漁業에 있어서는 그의 활성화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조직면에서 漁民後繼者의 육성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水協中央會의 非公式的인 조사에 의하면 1981년말 현재 전국에 조직되어 있는 33,686개의 새마을 靑少年會 중에서 漁村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1,080個로 전체의 3.2%에 불과하며, 회원수로는 연안지역 새마을 靑少年會의 회원이 27,685명으로 전체 회원수 635,465명의 4.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안에 위치한 새마을 靑少年會의 회원 27,685명 중에는 전남에 9,273명으로 전 연안 회원의 34%, 경남이 9,138명으로 전 연안 회원의 33%가 있고 <表3-6>, 이를 兩道에서만 다소의 활동상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또 沿岸지역 새마을 靑少年會員 27,685명에 대한 부모들의 주업을 보아도 겸업가구가 40%,

表 3-6 沿岸地域 새마을 靑少年會 會員數

支部別 區分	計	京畿	江原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濟州
會員數 (명)	27,685	627	652	1,916	646	9,273	2,990	9,138	2,443
構成比 (%)	100	2	2	7	2	34	11	33	9

資料 : 水協中央會

그림 3-1 沿岸地域 새마을 靑少年會 會員의 家口別 職業分佈



농업가구가 23%, 어업가구가 17%로서 연안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가구가 어업가구보다 훨씬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그림 3-1). 이상에서 현재의 새마을 靑少年會 중 沿岸地域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극히 적으며 그나마도 그들 會員의 부모 등이 漁業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社會教育으로서 새마을 靑少年會는 靑少年들이 漁村에 정착하여 漁業에 종사케 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새마을 靑少年會 이외에 靑少年들을 위한 社會教育으로서 精神 및 技術教育 指導와 產學協同 등을 들 수 있으나 漁業의 경우 이것 역시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즉 먼저 靑少年들을 대상으로 한 教育, 指導를 보면 農業의 경우 一般農民들에 대한 指導事業 외에 農村靑少年들을 위한 社會教育의 일환으로서 農村振興廳內에 「靑少年修練院」을 두고 教育, 指導를 행하고 있으나 漁業에 있어서는 一般漁民에 대한 指導事業은 있으나 漁村靑少年만을 위한 教育, 指導는 없다는 것이다. 產學協同도 漁村靑少年을 위한 社會教育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漁業에 있어서의 產學協同實態를 보면 水産系學校에 資金을 지원하여 어떤 課題를 연구케 하거나, 學生들에 대해 獎學金을 지급하는 외에 養殖場과 水産會社 등에서 學生들에 대한 實習機會를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그 기회와 對象者數가 많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漁業에 있어서의

産學協同도 매우 부진하여 漁村의 靑少年들로 하여금 漁業에 종사케 하는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第4章

漁民後繼者 育成事業

1. 沿革

漁民 後繼者 육성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도 직접적인 방법은 정책적으로 이들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는 여건만 주어진다면 漁村에 정착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 일정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후계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정책사업으로서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 중반부터이나 이것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不正蓄財 還收金으로 農漁民後繼者 育成基金이 조성된 이후라고 하겠다. 즉 1980년 8월 25일에 農漁民後繼者 育成強化(案)에 대한 大統領의 결재가 있었으며 同年 9월 10일에 農水産政策의 調整方向의 일환으로 農漁民後繼者 育成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 同年 11월 5일에는 法律 第3262號로서 「農漁民後繼者 育成基金法」(이하 基金法이라고 함)이 제정되었으며, 1981년 2월 28일에는 大統領令 第10209號로 「農漁民後繼者 育成基金法 施行令」이 제정, 공포되었다.

2. 事業推進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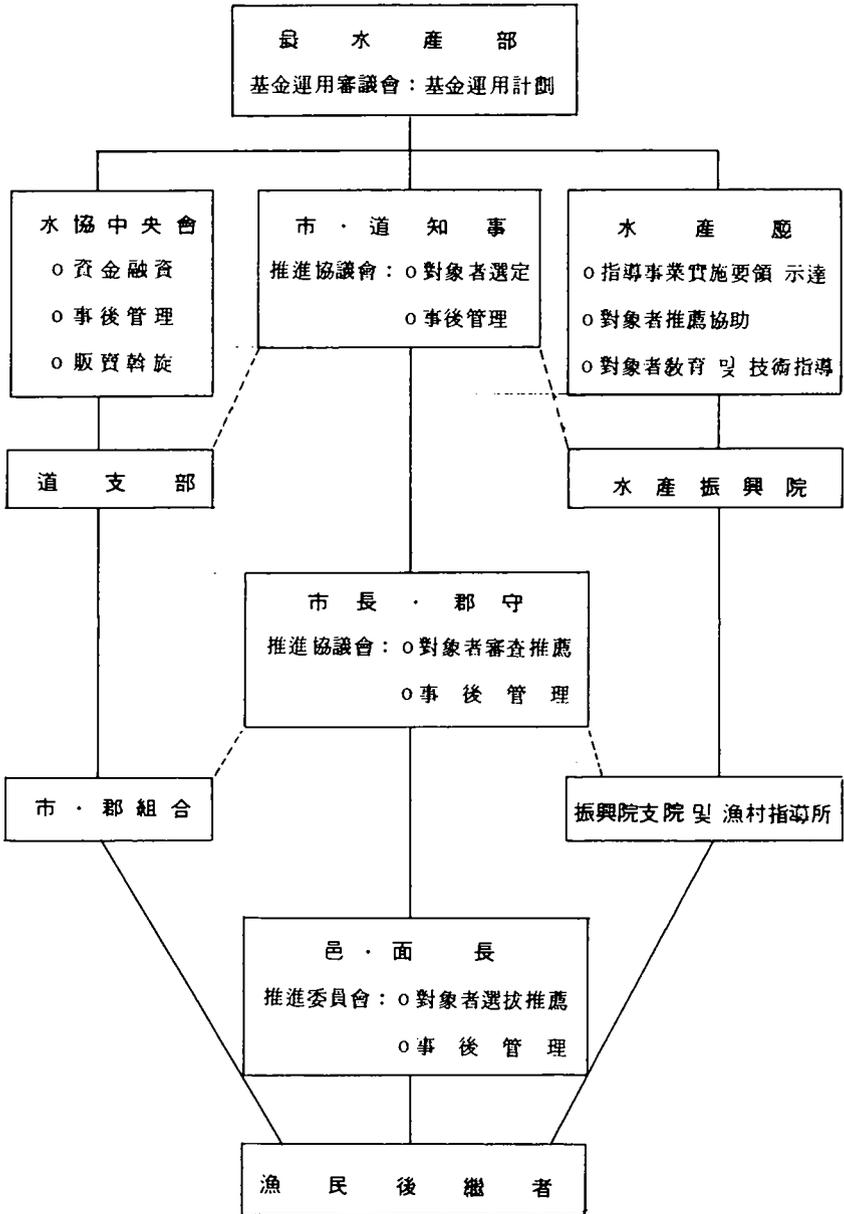
정책사업으로서의 현행 漁民後繼者 育成事業 추진체계를 보면 <그림 4-1>, 事業의 총괄주체는 農水産部로서 農水産部에서는 農漁民後繼者 育成基金 運用審議會를 두고 基金 운용,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市道, 市郡에서는 각각 推進協議會에서, 그리고 邑面에서는 推進委員會에서 本事業의 주요사항을 관장하는데, 市道 이하에서는 새마을運動協議會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먼저 邑面單位 추진협의회에서는 漁民後繼 對象者의 선발, 추천 및 사후관리를, 市郡單位 추진협의회에서는 後繼對象者의 심사, 추천 및 사후관리를, 市道單位 추진협의회에서는 後繼對象者의 확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관장하게 된다.

한편 水産廳에서는 指導實施要領을 시달하고 後繼對象者의 추천에 대해서 협조할 뿐만 아니라 後繼對象者에 대한 敎育 및 技術指導를 담당하며 國立水産振興院과 각 支院 및 漁村指導所에서도 각각 市道, 市郡의 推進協議會업무에 협조하고 있다. 또 水協中央會와 市郡組合에서는 자금융자, 사후관리 및 판매알선을 담당하고 있다.

3. 事業實施를 위한 基本事項

漁民後繼者 育成事業(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農民後繼者 育成事業과 같음)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사항은 농수산부에서 매년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 實施要領」을 정해서 관계기관에 시달하는데 관계기관에서는 이 요령에 의거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을 실시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1982년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4-1 漁民後繼者 育成事業 推進體系



가. 事業計劃 樹立

어떤 사업에서나 마찬가지로 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을 담당하는 자는 본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에서는 育成對象事業의 선정, 育成後繼者의 지역별 配定이 중요한 내용을 이루게 된다. 育成對象事業은 事業의 收益性, 安定性과 還金性 등 事業性을 감안하여 전망이 좋은 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새로운 소득품목의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한편 실제의 對象事業選定은 구체적인 漁業別로 標準設計를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基金法施行令 제 5조 제 1항의 事業(漁船漁業, 增養殖漁業, 共同漁業, 內水面漁業, 定置網漁業, 農水產物處理加工業, 기타 農水產部令으로 정하는 事業) 범위내에서 세부사업의 추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에서 정한 標準設計를 보면 <表 4-1> 과 같다.

지역별 育成後繼者의 배정은 각 市道別로 漁業人口數를 기준으로 하여 계획,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表 4-1 漁民後繼者 育成事業 標準設計(案)

單位：千圓

區 分	漁 業 別	規 模	收 益	所 要		支 援 (標準設計)	
				施 設 費	經 營 費	施 設 費	經 營 費
漁 船 漁 業	沿 岸 漁 業	7 T 級	1, 586	14, 469	4, 495		5, 000
	삼 치 流 網	12 "	2, 246	24, 486	10, 216		10, 000
	其 他 近 海	17 "	3, 691	34, 986	9, 547		10, 000
增 養 殖 漁 業	가 두 리 養 殖	400 m ²	15, 480	9, 162	24, 520	9, 000	
	主 要 貝 類	10 ha	2, 297	10, 030	8, 203	10, 000	8, 000
	새 丑 막	10 ha	4, 938	11, 220	6, 582	11, 000	7, 000
	投 石 式 貝 類	1 ha	2, 584	11, 921	5, 916	12, 000	6, 000
	海 苔	30 柵	2, 117	2, 187	3, 883	2, 000	4, 000
	種 苗 培 養 場	40 坪	2, 969	12, 084	6, 031	12, 000	6, 000
定 置 網 漁 業		4 T 級	4, 042	14, 700	17, 200		
潛 水 器 漁 業		7 T 級 (2 隻)	6, 289	9, 240	14, 832		

資料：水産廳

나. 後繼者의 選定

漁民後繼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개인이나 團體이나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다. 그 어떠한 경우이든간에 필요한 공통사항으로서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받은 35세 이하의 農漁村靑少年(男女구별 없음) 중 營漁定着의 신념과 의욕이 강한 자라야 한다. 단 이때 새마을 靑少年會員 또는 同會出身者와 水産系 大學 및 專門大學 卒業者는 同一 條件일 때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個人對象者의 경우는 水産系 學校(大學, 專門大學, 高校) 및 人文系 卒業者 3주 이상 專門營漁技術訓練履修者, 中央道單位 새마을 靑少年 競進大會 입상자, 水高 새마을 장학 수혜 卒業者, 水産增殖技術資格考試 합격자, 기타 추천권자가 추천하는 모범적인 農漁村 청소년, 농수산계 대학장 및 전문대학장이 추천하는 자 등이 되어 있으며 團體의 경우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새마을 靑少年會, 漁村靑少年會, 協同營漁團體 등이 후계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의 후계자 선정은 각 年度別로 農水産部長官→市·道知事→市·郡守→邑·面長에게 시달되는 事業實施 要領에 의해 실시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邑·面長은 시달받은 事業實施要領에 의거하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事業對象者 選定基準 및 申請書 接受期間, 作成方法 등을 알려 희망자는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資金 申請書의 각종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토록 한다. 신청서가 接受되면 邑·面長은 漁村指導員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사업내용을 검토케 한 후 검토의견이 적정한가,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갖추어졌는가, 1인당 지원액은 어업별 표준설계액의 90% 이상으로 계상되었는가 등에 관한 사항을 邑·面推薦委員會의 심의에 부쳐 複數로 시장 군수에 추천한다.

한편 시장, 군수는 邑·面長이 추천한 對象者에 대하여 대상자가 동일 읍면에서 너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水産課長으로 하여금 自立營漁 기반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개인별 기술과 경영능력, 사업종목과 방법, 사업 규모, 자금의 지원시기, 관내지역 여건과 잠재성, 표준설계액과 지원액의 차이 認可·許可·免許·承認의 가능성 판단 등을 검토하여 조정의견을 제

시케 한다. 또 읍면장이 추천한 대상자의 사업계획 내용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정밀 검토한 후 推進協議會에 보고하고, 市郡推進協議會에서 읍면장이 추천한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市道知事에게 추천한다.

市道知事は 市道推進協議會에서 전년도 후계자에 대한 2차년도 지원, 當年事業 대상자, 當年候補事業 대상자를 심의하여 확정된 다음,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農水産部長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水産廳長, 水協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當年候補事業 대상자는 當年度에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변경 또는 基金收益金の 증가 등에 따라 자금 추가배정시 지원할 예비 대상자이며 원칙적으로 결원보충은 당해 읍면 候補事業 대상자가 승계한다. 아울러 市道知事は 市長 郡守로 하여금 候補事業 대상자 및 탈락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어활동 상황을 관찰토록 하고 次年度 事業對象者 추천시 참작토록 한다.

다. 後繼者에 대한 教育訓練

後繼者로 선정되고 나면 일정한 기간 동안 事業을 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教育訓練을 받게 되는데 漁民後繼者의 경우 教育訓練 基本計劃 및 分期別 教育計劃은 水産廳에서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後繼者에 대한 教育은 다시 精神教育과 專門技術教育으로 나뉘어 지는데 정신교육의 경우는 市道에서 漁民後繼者의 확정명단을 水協中央會 道支部에 통보하면 각 道支部에서는 다시 中央會에 보고하고 中央會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教育 개시 10일전(1982년 경우)까지 水産廳에 보고하고 水協 研修院에 통보함과 동시에 教育對象者(後繼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

한편 專門技術教育은 1981년에는 國立水産振興院에서 실시하였으나 1982년에는 國立水産技術訓練所에서 실시하였다. 기술교육품종 중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어업을 경영하는 후계자는 水産振興院 漁村指導員의 專擔指導로 대신하며 漁船漁業 등은 별도의 安全操業教育 및 정신교육을 받게 된다.

精神教育은 漁村定着의 긍지와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融資方法과 資金管

리에 관한 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專門技術教育은 교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의 질적향상과 後繼者의 사업에 합당한 교육을 실시토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거친 後繼者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교부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教育訓練과는 별도로 後繼者로 지정된 자들이 사업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事後의 技術 및 經營指導에 관한 세부요령을 작성, 시달하고 산하기관의 지도사무를 감독하게 되는데 이에 支援對象者의 營漁計劃作成 指導, 營漁計劃에 관한 技術指導 및 教育, 專擔指導員의 배치 등이 포함된다.

라. 資金配定 및 融資

1) 資金配定 및 融資體系

後繼者育成資金의 배정은 後繼者의 선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事業別 자금은 分期別로 配定, 融資支援하고 있는데 자금의 需要時期와 분기별 資金支援時期를 일치시켜 자금의 效率性을 높이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漁民後繼者에 대한 실제의 融資는 農協中央會의 轉貸를 받아 水協中央會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資金의 배정 및 融資體系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수산부장은 자금조정사정을 감안하여 市道別 分期別 자금계획을 각 市道와 水協 및 관계기관에 시달하면 水協中央會는 각 市道系統機關에 分期別로 每分期初에 융자금을 배정하고 市道知事는 확정시달된 分期別 자금계획에 의거 市郡別, 分期別 資金支援計劃을 조정하여 시달하고, 水協道支部로 하여금 資金을 融資토록 한다.

2) 融資條件 및 融資方法

農漁民後繼者 育成基金資金의 貸出金利率은 연 5%이며 融資期間은 漁船漁業이나 養殖漁業 모두 3년 거치 4年 均分償還으로서 7년이다.

한편 融資方法을 보면 本資金은 信用貸出을 원칙으로 동일지역 거주자로서 경지면적 5단보 이상 소유자, 또는 전년도 財産稅 납부액이 5,000원 이상인 者 중 2인 이상의 연대보증에 의한 신용대출로 하며 예외적으

로 事業對象者의 요청이 있고 農林水產業者 信用保證附 貸出이 가능한 경우에는 信用保證附 貸出을 할 수 있다. 한편 融資實行 후 融資金이 투입된 施設物은 채권보전상 필요한 경우에 後取擔保로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일정에 따라서는 2차년도까지 분할용자 할 수 있으나 貸出金利子는 연 1회 後取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후계자로 선정된 후 익년도 1월 31일까지 용자를 받지 않으면 자격은 상실되고 그 자금은 農漁民後繼者 育成基金에 환입하게 된다.

3) 融資金의 回收

後繼者가 자금을 용자받은 후 상환기일 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目的外使用 등 融資金의 회수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읍면장은 즉시 市長 郡守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市長·郡守는 보고내용이 基金法 第8조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의 취소나 용자금의 회수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同 事業對象者에게 15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사업대상자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지체 없이 事業對象者에게 사업취소와 용자금을 상환할 것을 再通告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용자기관에도 용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때 市道知事도 사업의 취소와 용자금의 회수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승인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용자금을 회수토록 조치함과 동시에 農水產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融資金 償還通知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만일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연체금리를 적용받게 되고 회수한 용자금은 원칙적으로 다음달 말까지 基金에 상환하여야 한다.

한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融資元利金の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事業者가 발생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市長·郡守는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市道知事에게 제출하며, 市道知事는 이를 검토하여 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市道事業推進協議會의 심의를 거쳐 農水產部長官에게 償還期間 延長申請書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농수산부 장관은 이를 基金運用審議會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事業計劃의 變更

漁民後繼者가 사업착수 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漁村指導員에게 검토의견을 받아 타당성이 인정될 때 다음과 같이 읍면장에게 신고하거나 읍면장을 경유하여 市長·郡守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사업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읍면장에 신고하고, 사업품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사업종별 자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게 되어 있다.

한편 後繼者가 사업장을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市長·郡守에게 事業場移動承認申請書를 제출하고 市長·郡守가 이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할 漁村指導員 融資取扱 機關의 협조를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承認時에는 市道知事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事業의 評價

後繼者 育成事業에 대한 評價는 事業推進狀況 評價와 事業成果 評價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추진상황 평가는 市長·郡守가 每分期別로 사업추진상황을 市·道知事에게 보고하고 市道知事는 다시 매분기별로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수산청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事業成果 평가는 연간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市道知事는 農水産部長官이 별도로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農水産部長官 및 關係機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農水産部長官, 水産廳長,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는 사업추진상황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에 의하여 문제점에 대한 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事後管理

水協中央會에서는 漁民後繼者들에 대한 資金 및 機資材 지원 뿐 아니라 지원자금의 事後管理와 생산물에 대한 판매 및 수매를 알선, 지원해 주어

야 한다. 즉 水協中央會는 자금지원, 사후관리 및 수산물의 판매에 관한 세부요령을 작성, 시달하고 산하조직의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새어민 등 전문기관지 및 기술 시장 정보 자료의 보급에 협조하여야 한다.

한편 水協中央會 및 農漁村開發公社는 정부비축사업을 실시할 경우 漁民後繼者 育成事業 대상자의 생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4. 事業實績

가. 選定된 漁民後繼者들의 일반적 事項

1) 年 齡

1981년에 선정된 漁民後繼者의 경우는 총 150명 중 25세 미만이 35명으로서 23.3%, 25~30세가 115명으로서 76.7%를 차지하였고 31세 이상은 한 명도 없었는데 이것은 1981년에는 31세 이상은 선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1982년에는 漁民後繼者 151명 중 年齡의 확인이 곤란한 2명을 제외한 149명을 대상으로 한 年齡의 分布를 살펴보면 25세 미만이 31명으로 20.8%, 25~30세가 85명으로 57.0%, 31~35세가 33명으로 전체의 22.2%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1982년에 31~35세의 후계자의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은 1982년에는 후계자의 年齡上限線을 35세로 上向조정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이들이 사업기반 및 사업수행 능력 등 後繼者로서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을 거의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表 4-2>.

이상에서 볼 때 후계자의 年齡分布는 후계자 연령조건이라는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으나 현재까지는 25~30세의 연령층이 중심이 되고 있다.

表 4-2 漁民後繼者の 年齡分布

單位：名，%

年 度	25 세 미만	25 ~ 30 세	31 ~ 35 세	計
1981	35 (23.3)	115 (76.7)	— —	150 (100.0)
1982	31 (20.8)	85 (57.0)	33 (22.2)	149 (100.0)
計	66 (22.1)	200 (66.9)	33 (11.0)	299 (100.0)

註：1982년도 漁民後繼者 중 年齡確認이 곤란한 2명은 제외하였음.

資料：農水産部, 農漁民後繼者 및 事業計劃 1981, 1982에서 作成

2) 學 歷

1982년 漁民後繼者 151명 중 定置網漁業을 경영하는 자 1명과 학력을 파악할 수 없는 1명을 제외한 149명의 漁民後繼者 學歷은 (表4-3)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에 의하면 학력별로는 高卒者가 75명에 전체의 50.3%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中卒者로 47명에 31.5%에 이르고 있다. 中卒者 다음으로는 專門大卒者가 15명에 10.0%를 보이고 있고 國卒도 7명(4.7%)이나 있으며 大卒者는 5명으로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4-3 漁民後繼者の 學歷狀況 (1982년)

單位：名 (%)

學 歷	國 卒	中 卒	高 卒		專 門 大 卒		大 卒		計
			水 高	其他高	水 專	其他專門大	水 大	其他大	
增 養 殖	2 (2.4)	27 (31.8)	7 (8.2)	31 (36.5)	12 (14.1)	2 (2.4)	2 (2.4)	2 (2.4)	85 (100.0)
漁船漁業	5 (7.8)	20 (31.3)	14 (21.9)	23 (35.9)	1 (1.6)	—	1 (1.6)	—	64 (100.0)
計	7 (4.7)	47 (31.5)	21 (14.1)	54 (36.2)	13 (8.7)	2 (1.3)	3 (2.0)	2 (1.3)	149 (100.0)

註 1. 반올림관계로 合計가 一致하지 않음.

2. 增養殖에 種苗培養業을 포함시켰음.

3. 漁船漁業 1名은 學歷 파악 불가로 삭제했음.

資料：農水産部, 農漁民後繼者 및 事業計劃, 1982년에서 作成

한편 漁民後繼者의 학력을 漁業別로 보면 1982년의 경우 國卒者는 漁船 漁業 후계자가 種苗培養業을 포함한 增養殖漁業, 후계자보다 다소 많으며 漁業別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다소 높다. 한편 中卒 및 水高 이외의 高等學校 卒業者는 兩漁業別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며, 大卒者는 增養殖漁業 후계자가 漁船漁業 후계자보다 많으며 漁業別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다소 높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사실은 水高卒業者 중에는 漁船漁業 후계자가 增養殖漁業 후계자보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水產專門大學 졸업자 중에는 增養殖漁業 후계자가 漁船漁業 후계자보다 그 수에 있어서나 漁業別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면에 있어서나 훨씬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 前者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後者의 경우는 水專 漁業學科 출신자들은 대개 졸업 후 遠洋漁船에 승선, 취업하려는 사람이 많았고 실제로도 漁業關係 종사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遠洋漁船에 승선, 취업하였으며 沿岸漁船에 승선, 취업하거나 沿岸漁業에 종사한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나. 個人 및 團體後繼者 選定

本事業 실시 첫째 해인 1981년에는 150명의 漁民後繼者를 선정하였는데 이 중에는 個人이 128명으로 85.3%, 團體가 22건으로 14.7%를 차지하였다(表4-4). 團體 22건 중에는 漁村契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一般團體로 6건, 漁村靑少年會는 3건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1982년에는 총 151명의 漁民後繼者가 선정되었는데 이 중 團體는 4건

表 4-4 個人 및 團體 漁民後繼者 選定

區 分 年 度	合計	個人	團 體										
			團體 小計	漁 村 契			漁村靑少年會			一 般 團 體			
				5名 未滿	5~9 名	10名 以上	5名 未滿	5~9 名	10名 以上	5名 未滿	5~9 名	10名 以上	
1981	150	128	22	-	10	3	-	3	-	-	-	6	-
1982	151	147	4	-	-	-	-	-	-	-	-	4	-

資料：農水産部, 1981, 1982年度 農漁民後繼者 및 事業計劃

(2.6%)으로서 1981년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하였다.

다. 漁業別, 地域別 漁民後繼者 選定 및 支援

1981, 1982년의 漁業別, 地域別 漁民後繼者 選定 및 支援實績은 <表 4-5>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에 의하여 年度別 漁業別 選定件數를 살펴 보면 1981년에는 增養殖漁業이 78건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漁船漁業의 59건으로 39.3%, 種苗培養業이 10건으로 6.7% 定置網漁業이 2건에 1.3%, 內水面漁業이 1건에 0.7%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種苗培養業은 廣義로는 增養殖漁業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므로 이럴 경우 增養殖漁業의 선정조건은 88건에 전체 件數의 58.7%를 차지하게 된다.

1982년은 전체 件數에 있어서는 1981년에 비해 1건이 더 늘어난 151건으로 이 중에서 增養殖漁業이 73건에 48.3%(種苗培養業을 포함시키면 85건에 56.2%)로서 1981년에 이어 가장 많이 선정되었고, 그 다음이 漁船漁業으로 65건에 43.0%, 種苗培養業이 12건에 7.9%, 定置網漁業이 1건에 0.7%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1982년에는 1981년에 비해 增養殖漁業의 選定件數는 다소 줄어든 반면 漁船漁業은 다소 늘어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支援金額實績을 보면 1981년의 경우 漁業別로 件當 平均支援金額 差異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漁業別 支援金額의 전체 支援金額에 대한 비율은 漁業別 選定件數의 전체 漁業 選定件數에 대한 비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1982년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地域別 選定 및 支援實績을 보면 選定件數의 면에서나 支援金額의 면에서 全南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으며, 그 다음이 경남이고 강원, 경북, 충남은 年別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라. 教育訓練實績

漁民後繼者로 선정된 후 일정기간 동안 받게 되는 教育訓練은 精神教育과 專門技術教育으로 나뉘어 짐은 전술한 바와 같다. 먼저 精神教育에 대

表 4 - 5 漁業別, 地域別 漁民後繼者 選定 및 支援實績

單位: 百萬圓, %

地 區 分 域 年 度	增 養 殖				種 苗 培 養				漁 船 漁 業				定 置 網				內 水 面				合 計			
	件 數	金 額	件 數	金 額	件 數	金 額	件 數	金 額	件 數	金 額	件 數	金 額	件 數	金 額	件 數	金 額	件 數	金 額	件 數	金 額	件 數	金 額		
釜 山	3	3	12	24	-	-	-	-	-	-	-	-	-	-	-	-	-	-	-	3	3	12	24	
	-	-	-	-	-	-	-	-	-	-	-	-	-	-	-	-	-	-	-	(2.0)	(2.0)	(1.7)	(1.9)	
仁 川	-	-	-	-	-	-	-	-	1	2	7	16	-	-	-	-	-	-	-	1	2	7	16	
	-	-	-	-	-	-	-	-	-	-	-	-	-	-	-	-	-	-	-	(0.7)	(1.3)	(1.0)	(1.2)	
京 畿	1	1	3	8	-	-	-	-	6	5	27	40	-	-	-	-	-	-	-	7	6	30	48	
	-	-	-	-	-	-	-	-	-	-	-	-	-	-	-	-	-	-	-	(4.7)	(4.0)	(4.3)	(3.7)	
江 原	5	-	21.5	-	-	-	-	-	8	11	45.5	89.5	-	1	-	8.5	-	-	-	13	12	67	98	
	-	-	-	-	-	-	-	-	-	-	-	-	-	-	-	-	-	-	-	(8.7)	(7.9)	(9.6)	(7.6)	
忠 南	11	7	40	56.9	1	3	5	24.4	1	4	3	32.7	-	-	-	-	1	-	5	14	14	53	114	
	-	-	-	-	-	-	-	-	-	-	-	-	-	-	-	-	-	-	-	(9.3)	(9.3)	(7.6)	(8.9)	
全 北	3	3	23	24	-	-	-	-	-	2	-	16	-	-	-	-	-	-	-	3	5	23	40	
	-	-	-	-	-	-	-	-	-	-	-	-	-	-	-	-	-	-	-	(2)	(3.3)	(3.3)	(3.1)	
全 南	40	39	174	315	7	8	29	66	17	14	62	115	-	-	-	-	-	-	-	64	61	265	496	
	-	-	-	-	-	-	-	-	-	-	-	-	-	-	-	-	-	-	-	(42.7)	(40.4)	(37.9)	(38.7)	
慶 北	2	6	12	48	-	-	-	-	5	9	33	74	2	-	10	-	-	-	-	9	15	55	122	
	-	-	-	-	-	-	-	-	-	-	-	-	-	-	-	-	-	-	-	(6)	(9.9)	(7.9)	(9.5)	
慶 南	12	14	78.7	119.4	2	1	15.4	9.7	5	8	33.9	114.3	-	-	-	-	-	-	-	19	23	128	243.9	
	-	-	-	-	-	-	-	-	-	-	-	-	-	-	-	-	-	-	-	(12.7)	(15.2)	(18.3)	(19.0)	
濟 州	1	-	9	-	-	-	-	-	16	10	51	81	-	-	-	-	-	-	-	17	10	60	81	
	-	-	-	-	-	-	-	-	-	-	-	-	-	-	-	-	-	-	-	(11.3)	(6.6)	(8.6)	(6.3)	
合 計	78	73	373.2	595.3	10	12	49.4	100.1	59	65	262.4	578.5	2	1	10	8.5	1	-	5	150	151	700	1,282.4	
	(52.0)	(48.3)	(53.3)	(46.4)	(6.7)	(7.9)	(7.1)	(7.8)	(39.3)	(43.0)	(37.5)	(45.1)	(1.3)	(0.7)	(1.4)	(0.7)	(0.7)	-	(0.7)	(100.0)	(100.0)	(100.0)	(100.0)	

註: () 內는 전체에 대한 百分比인.

資料: 農水産部, 農漁民後繼者 및 事業計劃, 1981, 1982에서 作成.

하여 살펴 보면, 첫째 精神教育의 실시기관은 水協中央會(研修院)으로서 1981年, '82년의 兩年間 이곳에서 실시하였다. 둘째, 教育對象은 漁民後繼者 育成事業 支援對象者 전원(團體의 경우에는 構成員 전원)으로 1981년과 '82년에 對象者 전원인 150명과 151명이 정신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들이 모두 水協中央會에서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고 出漁 등으로 水協中央會에서 실시한 教育에 參席치 못한 자들은 市道에서 실시한 새마을教育으로 대체하였다. 셋째, 教育期間은 1주일간으로서 1981년에는 5월 11일에서 16일까지, 1982년에는 5월 24일에서 29일까지 실시하였다. 넷째, 教育方法은 새마을 教育方法으로 教育期間 중 舍宿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다. 다섯째, 教育內容은 1981년과 1982년 별로 변동이 없는데 1982년의 경우를 보면 (1) 國民精神教育, (2) 새마을運動의 理念과 基本方向, (3) 1980년대 農政方向과 水產施策, (4) 協同組合運動, (5) 水產資源保護와 不正漁業團束, (6) 沿近海所得資源開發, (7) 漁民後繼者育成, (8) 漁村開發 成功事例 등이다.

다음 專門技術教育을 보면 첫째, 실시기관은 1981년에는 國立水產振興院 및 산하 支院이었으나 1982년에는 國立水產技術訓練所에서 실시하였다. 둘째, 教育對象은 精神教育과 마찬가지로 支援對象者 全員이며 실제 教育을 받은 人員도 1981년에 150명, 1982년에 151명으로 전원 教育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역시 出漁 등으로 실제로 教育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漁村指導員의 現場教育으로 대체하였다. 셋째, 教育期間은 1981년에는 7일간 이상으로 하였으나 1982년에는 4일간으로 단축하였다. 따라서 1981년에는 6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1차에 1주일씩 14차에 걸쳐 한 곳에서 여러 漁種을 對象으로 하여 실시하였으며 <表 4-6> 1982년에는 4월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5차에 걸쳐 漁種別로 실시하였다 <表 4-7>. 넷째, 教育方法으로는 理論教育과 現場教育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마. 事業計劃

本事業에 대한 評價는 事業推進狀況評價와 事業成果評價로 나누어 살펴

表 4 - 6 1981 年 漁民後繼者 專門技術教育 實施場所 및 日程

單位：名

教育日程	支院別								計
	本院	仁川	注文津	群山	浦項	木浦	麗水	濟州	
第 1 次 (6. 22~27)								14	14
第 2 次 (6.27~7.1)	7						2		9
第 3 次 (7.11~16)	4	7					2		13
第 4 次 (7.16~21)				10					10
第 5 次 (7.18~23)	5	1	7	6		15	12		46
第 6 次 (7.25~31)			4		1	11	3		19
第 7 次 (8.1~ 6)						11			11
第 8 次 (8.8~ 13)					8			2	10
第 9 次 (8.15~20)	4			1			2		7
第 10 次 (8.22~27)							3		3
第 11 次 (9.5~10)								1	1
第 12 次 (9.19~24)			1						1
第 13 次 (11. 14~19)						2			2
第 14 次 (11.21~26)							2		2
計	21	8	12	17	9	40	26	17	150

資料：國立水產振興院 指導科

表 4 - 7 1982 年 漁民後繼者 專門技術教育 實施場所 및 日程

魚 種 別	場 所	日 程
우렁쟁이 養殖	忠 武	4. 13 ~ 4. 16
內水面 養殖	鎮 海	4. 27 ~ 4. 30
海 苔 養殖	群 山	5. 11 ~ 5. 14
海 苔 養殖	鹿 洞	6. 22 ~ 6. 25
선 복 養殖	麗 水	6. 8 ~ 6. 11

資料：國立水產技術訓練所

表 4 - 8 漁民後繼者 事業推進狀況

單位：件

年 度	事 業 推 進 變 更			免許, 許可의 未 取 得
	事業者變更	代表者變更	事業內容變更	
1981	7	8	23	23
1982	3	-	9	?

註：1981 年은 '81 年말 현재, 1982 年은 '82 年 11 月말 현재의 狀況임.

資料：水產廳

볼 수 있다. 먼저 事業推進狀況에 대해서 살펴 보면 1981년에 事業者 변경이 7건, 代表者 변경이 8건, 事業內容 변경이 23건으로 총 38건의 事業推進 변경이 발생하였고, 23건이 免許나 許可를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어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4-8). 한편 1981년에는 事業者變更이 3件, 事業內容 변경이 9건으로 총 12건의 事業推進變更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1981년에 비해서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다음 事業成果에 대한 評價로서, 最近 정부(水産廳)에서 발표한 1981년 漁民後繼者에 대한 事業成果 分析結果를 보면, 지금까지 총 14억 9,600 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1982년 6월말 현재 총 10억 8,200 만원의 收益을 올림으로써 費用을 제외하고도 3억 9,800 만원의 利益을 올렸다는 것이다. 또 後繼者 1인당 所得金額의 分布狀況을 살펴 보면 200만원 미만의 所得을 올린 後繼者가 전체의 30%, 200~300만원의 所得을 올린 後繼者가 13%, 300~400만원의 所得을 올린 後繼者가 10%, 400만원 이상의 所得을 올린 後繼者가 22%로 나타났는데(表 4-9) 나머지 25%의 後繼者는 전복, 우렁쟁이 등 養殖期間이 비교적 긴 業種에 종사함으로써 同時點에서는 事業의 成果를 分析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200만원 미만의 所得을 올린 後繼者들은 거의 個人事故 등으로 인하여 漁業의 經營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表 4-9 1981年 漁民後繼者 事業成果

所 得	構 成 比
200 萬 元 未 滿	30 %
200 ~ 300 萬 元 未 滿	13 %
300 ~ 400 萬 元 未 滿	10 %
400 萬 元 以 上	22 %
算 定 不 可	25 %

資料 : 水産廳

第5章

設問調査를 통하여 살펴본 漁民後繼者 育成事業에 대한 反應

1. 調査 및 分析의 概要

漁民後繼者 育成事業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1982년 9월 設問紙調査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는 1981년과 82년에 선정된 총 301명(團體의 경우는 代表者 1名)의 漁民後繼者 전원과, 전국 1,440個의 漁村契 중에서 無作為 抽出된 144個 漁村契에 대하여 漁村契마다 3명씩 총 432명의 一般漁民, 그리고 전국 14개 水産系 高等學校 및 專門大學(綜合高等學校 및 實業專門大學 중 水産關係學科 設置校 포함) 중에서 5개 학교의 增殖科와 漁業科 高學年 학생 282명 등 총 1,015명을 標本集團으로 삼아 設問紙를 배부하였다.

設問紙는 漁民後繼者, 一般漁民, 水産系 學校 學生의 3그룹別로 대상에 맞는 問項만을 골라 각각 준비되었으나, 23개 문항은 3그룹에 공통되는 것이었다.

실제 조사에 있어 漁民後繼者에게는 設問紙를 개인별로 우송하여 記入 후 반송토록 부탁하였으며, 一般漁民에게는 각 漁村契別로 漁村契長에게

3통의 設問紙를 우송하여 1통은 漁村契長 본인이, 나머지 2통은 마을에서 漁業을 하는 住民 중 靑年層과 老壯層에서 각 1개씩 골라 이를 나누어 주고, 각자 記入하여 반송토록 부탁하였다. 水産系學校 학생에 대하여는 研究員이 직접 해당학교를 방문해서 學校側의 協助를 얻어, 增殖科와 漁業科의 高學年 學生을 대상으로 自筆記入토록 한 후 회수하였다.

設問紙 回收率은 漁民後繼者 그룹의 경우는 總發送部數 301부에 대하여 185부가 회송해 옴으로써 61.5%의 높은 회수률을 보였으나, 一般漁民 그룹의 경우는 총 432부를 발송한데 대하여 100부만이 회송되어 옴으로써 23.1%의 비교적 저조한 回收率을 보였다. 이는 一般漁民이 漁民後繼者 자신보다 漁民後繼者 育成事業에 대한 관심이 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으나, 그외에도 漁村契長의 住所錄이 1980년 현재의 것을 기준으로 했던바 그동안에 契長의 更迭, 住所變更도 回收率 저조에 큰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資料分析을 위한 階層區分은 漁民後繼者의 경우 後繼者 育成事業에 선정된 사업형태에 따라 養殖業과 漁船漁業의 2계층으로 구분하였으며 一般漁民의 경우는 해당 漁民이 지금까지 종사한 경험이 있는 漁業形態에 따라 養殖業, 漁船漁業, 養殖業과 漁船漁業에 모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계층의 3계층으로 나누었고, 水産系 學校 學生은 所屬學科에 따라 增殖科와 漁業科로 나누었다.

집계된 漁民後繼者는 총 185명으로, 이 중 養殖業後繼者가 103名(55.7%)이고 漁船漁業 後繼者는 82名(44.3%)이었다. 그리고 이를 選定年度別로 보면 1981년 선정된 後繼者가 83名(44.9%)이고, 82년에 선정된 자는 102名(55.1%)이었다.

총 185명을 市道別로 보면 <表 5-1>, 全南이 42.2%인 7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慶南의 26名(14.1%), 慶北의 18名(9.7%) 등의 순이었다.

한편 총 100명의 一般漁民 중에는 養殖業者가 41名, 養殖과 漁船漁業의 兼업자가 25名, 그리고 漁船漁業者가 34名이었다. 一般漁民 總數를 다시 地域別로 보면, 全南이 4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慶南의 15名,

表 5 - 1 設問 調査對象者の 市道別 分布

單位：名

	漁民後繼者			一般漁民			
	養殖業	漁船漁業	合計	養殖業	養殖+漁船	漁船漁業	合計
釜山	4	-	4	1	-	-	1
京畿	2	10	12	-	-	3	3
江原	3	10	13	-	-	10	10
忠南	12	2	12	5	6	1	12
全北	5	1	6	-	-	-	-
全南	54	24	78	29	6	5	40
慶北	7	11	18	-	4	8	12
慶南	16	10	26	4	8	3	15
濟州	-	14	14	2	1	4	7
合計	103	82	185	41	25	34	100

그리고 慶北과 忠南이 각각 12명 등의 순서를 보였으며 全北에서는 회송한 漁民이 없었다.

水産系 學校 學生은 지역과 학력을 감안하여 麗水水産專門大學, 群山水專, 大川水産高等學校, 南海水高, 注文津水高의 학생 총 282명을 조사하였는데, 이 중 水産專門大學生이 94명(33.3%)이고, 水産高等學生은 188명(66.7%)이었다. <表 5-2> 그리고 이들을 所屬學科別로 보면 增殖科學生이 144명(51.1%)이고, 漁業科學生은 138명(48.9%)이었다. 增殖科學生 144명 중에는 女學生 46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學生들의 父母가 거주하는 지역(現住所)과 所屬學校 위치와의 관계를 보면, 學校가 위치한 郡과 동일한 郡(市일 경우는 隣接郡 포함)에 주소를 갖고 있는 地域出身 학생은 68.1%이고, 他郡에서 공부하러 온 外地出身 학생이 31.9%였다. 이를 다시 學校別로 보면 水專生은 地域出身보다는 外地出身 學生이 많았고, 水高生은 外地出身보다 地域出身 學生이 훨씬 많았다.

調査對象者를 年令別로 보면, 漁民後繼者의 경우, 1981년에는 30세 이하에서 선정하였으므로, 30세 이상은 물론 없었지만, 1982년에는 선정基準 年令을 35세까지로 上向調整함으로써 本調査에서는 82년 선정 調

表 5-2 水産系 學校 學生의 住所와 所屬學校 位置와의 關係

		水 專 生			水 高 生			總 計
		增殖科	漁業科	小 計	增殖科	漁業科	小 計	
學 生 數 (名)	地 域 出 身	28	4	32	68	92	160	192
	外 地 出 身	41	21	62	7	21	28	90
	合 計	69	25	94	75	113	188	282
比 率 (%)	地 域 出 身	40.6	16.0	34.0	90.7	81.4	85.1	68.1
	外 地 出 身	59.4	84.0	66.0	9.3	18.6	14.9	31.9
	合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査者 총 102명 중 31~35세가 34명 포함되어 있다.

한편 一般漁民의 경우는 調査對象者 총 100명 중, 35세 이하가 26명 36~45세가 37명, 46세 이상이 37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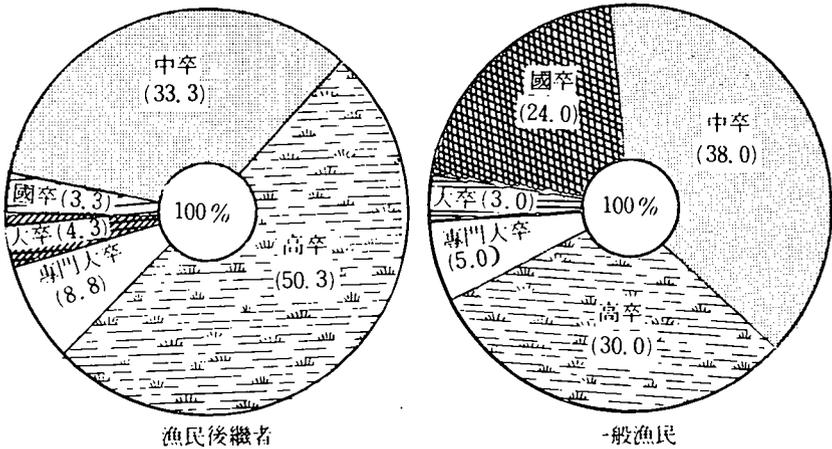
2. 說問調査 對象者들의 一般事項

가. 學歷

學歷은 예상대로 漁民後繼者가 一般漁民보다는 높은 편이다. 즉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漁民後繼者는 中卒 이하가 36.6%이고, 高卒者가 50.3%, 그리고 專門大卒 이상이 13.1%로 高卒者의 비율이 가장 높는데 반해 전체 一般漁民의 경우는 中卒 이하가 62%, 高卒者가 30% 專門大卒 이상이 8%로 모두는 中卒者(38%)에 있었다.

한편 一般漁民 중 35세 이하의 漁民만을 대상으로 하면 學歷이 一般漁民 전체의 平均值보다 다소 높아져, 中卒 이하가 50.0%, 高卒이 30.8%, 專門大卒 이상이 19.2%로 되어 漁民後繼者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로 미루어 보아 漁民後繼者의 선정에 學歷이 큰 要因으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 設問調査 對象者の 學歷分布



나. 漁業從事年代

現在 漁業과 관련을 맺고 있는 調査對象者들의 家系가 漁業에 얼마나 오랫동안 종사해 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表 5-3>을 작성하였다.

漁民後繼者와 一般漁民은 거의 같은 경향을 보이는 바, 祖父代부터 漁業에 종사했다는 집안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父代, 本人 當代, 그리고

表 5-3 漁業從事年代 比較

單位 : %

	漁民後繼者	一般漁民	水産系學生
曾祖父代 이전부터	14.7	13.0	3.6
祖父代부터	35.9	31.0	8.7
父代부터	33.7	31.0	23.9
當代부터	15.8	25.0	63.8
合計	100	100	100

曾祖父代 이전부터의 순으로 漁業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水産系 學生은 63.8%가 當代에 처음으로 水産系 學校에 入學함으로써, 漁業과 연관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고, 父代부터 漁業에 종사한 비율은 23.9%였으며 祖父代 이전부터 漁業에 종사한 비율은 전부해서 12.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후에 기술할 水産系 學生들의 水産系 學校에 入學하게 된 연유가 父母나 親戚보다는 本人의 희망에 의해 入學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원등히 높은 사실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반해 當代에 처음으로 漁業을 시작하였다는 비율이 漁民後繼者는 15.8%, 一般漁民은 25% 뿐으로 대다수가 적어도 2~3代 이상 漁業을 영위하는 집안이므로, 漁業은 家系傳承的 직업이란 感이 있다.

다. 經濟的 水準

調査對象者들 집안의 經濟的 수준이 마을에서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 본 결과, 3그룹이 모두 같은 경향치를 보였다. 즉 마을 平均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60~70% 수준이고 <表5-4>, 나머지는 잘사는 편이라는 것보다는 못사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약간 높았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이로 보아 漁民後繼者나 水産系 學生이 마을의 비교적 裕福한 집안 출신 子女들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表5-4 마을에서의 자기 집안의 相對的인 經濟水準

單位 : %

	漁民後繼者	一般漁民	水産系學生
아주 잘 사는 편	0.5	-	0.7
좀 잘 사는 편	10.9	16.0	9.2
마을의 平均水準	71.7	60.0	64.9
좀 못사는 편	15.2	21.0	20.2
아주 못사는 편	1.6	3.0	5.0
合 計	100.0	100.0	100.0

라. 水産業에 대한 展望

우리 나라 水産業의 展望에 있어서도 3그룹이 생각하는 바가 거의 비슷하게, 半數 以上 정도가 밝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비율은 水産系 學生이 가장 높아 展望이 밝다가 65.6%, 現水準을 유지하는 정도일 것이다가 28.7%인데 반해, 展望이 어둡다는 學生은 5.7%에 불과 하였다 <表 5-5>.

表 5-5 우리나라 水産業의 將來에 대한 展望

單位 : %

	漁民後繼者	一般漁民	水産系學生
展望이 밝다.	49.5	49.0	65.6
現水準維持	38.6	36.0	28.7
展望이 어둡다.	12.0	15.0	5.7
合 計	100.0	100.0	100.0

漁民後繼者에서는 밝다가 49.5%, 現水準維持가 38.6%, 어둡다가 12.0%이고, 一般漁民은 밝다가 49%, 現水準維持가 36%, 어둡다가 15%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3그룹 모두 우리 水産業의 將來를 긍정적으로 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위에서 水産系 學生들이 水産業을 보는 눈이 一般漁民은 물론 漁民後繼者보다도 긍정적이며 理想的임을 살펴 보았다. 이들이 생각하는 바를 좀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 아래 事項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學生들의 水産系學校에 입학하게 된 緣유를 조사해 본 결과, 本人의 希望에 따라 입학하게 되었다는 學生이 대부분(71.2%)이고, 家族 親戚 등의 권유(15.5%)나, 주변에 學校가 水産系 學校 뿐이어서(6.1%), 혹은 기타(7.2%)요인으로 入學한 경우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本人 希望에 의한 水産系 學校 入學生이라도 水高生(68.6%)보다는 水專生(76.3%)이 높으며, 增殖科學生(60.3%)보다는 漁業科學生(82.5%)이 높았다.

그리고 자신이 水産系 學校 學生이라는데 대하여 긍지를 느낀다 (63.6%)와 適性에 맞으나 將來性이 없어 불안하다(24.0%)는 學生이 다수인 반면 他系統學校로 轉學을 희망하는 學生은 12.4%에 불과하였다.

卒業後의 進路에 대하여도 水産系職場에의 就職을 희망하는 學生이 45.7%로 가장 많고, 다음이 上級學校 進學으로 19.9%, 水産業自營 희망이 19.5%였으며, 他系統 分野로의 進出希望은 14.9%밖에 되지 않는다. 예상한 바대로 水産系 職場은 增殖科學生(32.6%)보다는 漁業科學生이 더 많이 희망하고 있으며(59.4%), 自營漁業은 漁業科學生(15.9%)보다 增殖科學生이 더 많이 희망(22.9%)하고 있다.

卒業 후 水産系統分野로 진출하지 않게 되는 主要因으로 學生들은 水産에 종사하고 싶으나 資本이 없는 이유(43.0%)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이 水産系統會社에의 就職이 어려워서(36.2%)를 꼽고 있다. 이로 보아 많은 水産系學校 卒業生이 水産에 흥미가 없거나, 漁村生活이 싫어서, 혹은 漁業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서 漁業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무튼 水産系 學生들은 대부분이 漁民後繼者 事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들 자신이 漁民後繼者로 선정되기를 희망(50.9%)하고 있다.

마. 漁業經營에서 느끼는 隘路點

調査對象者들은 漁業을 경영하는데 있어 資金不足을 가장 큰 애로점으로, 그리고 販路 및 價格問題를 두번째의 애로점으로 들고 있다. 이것은 3그룹에서 똑같이 지적된 결과이다.

다음으로 큰 애로점으로는 그룹마다 순위에 약간씩 差가 있었으나 漁民後繼者는 勞動力不足, 漁業資源枯竭, 技術不足, 水質汚染 등의 순으로 애로점을 지적하고 있다. 一般漁民은 資源枯竭, 技術不足, 勞動力不足, 水質汚染의 순으로 애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水産系學生은 물론 앞으로의 漁業經營을 가정한 것이겠지만, 技術不足, 資源枯竭, 水質汚染, 周圍 사람의 賤視의 순으로 애로점을 꼽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애로점

의 순위에 약간씩의 差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漁業經營의 큰 애로점은 資金, 價格, 勞動力, 技術, 資源枯渴, 水質汚染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 장래의 希望 漁業 種類

앞으로 漁業을 계속할 경우, 하고 싶은 漁業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보아 현재 養殖分野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養殖業을 하겠다고 희망했으나, 漁船漁業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養殖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表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漁民後繼者 중 養殖業者는 98.0%가 장래에도 養殖을 택하고, 2.0%만이 漁船漁業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反해, 漁船業 後繼者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 47.1%가 養殖業을 희망하고, 52.9%가 漁船業을 계속할 의향을 밝혔다.

一般漁民 중 養殖業者는 91.5%가 養殖을 계속 희망하고, 漁船業者도 51.1%나 養殖을 하고 싶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水産系學生의 경우, 增殖科 學生은 99.3%가 養殖業을 희망하고 있고, 漁業科 學生 중에는 34.4%가 養殖業을 희망하였다.

表 5-6 將來에 하고 싶은 漁業種類

單位：%

		養殖業 希 望	漁船漁業 希 望	合 計
漁民後繼者	養殖業	98.0	2.0	100.0
	漁船漁業	47.1	52.9	100.0
	合 計	74.5	25.5	100.0
一 般 漁 民	養殖業	91.5	8.5	100.0
	養殖+漁船	78.9	21.1	100.0
	漁船漁業	51.1	48.9	100.0
	合 計	73.8	26.2	100.0
水産系學生	增殖科	99.3	0.7	100.0
	漁業科	34.4	65.6	100.0
	合 計	67.9	32.1	100.0

3. 漁民後繼者 育成事業에 대한 反應

가. 事業規模의 擴大

1981년부터 政府에서 실시하고 있는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에 대하여, 調査對象者의 대부분이 이 制度에 대하여 좋은 반응을 보여, 규모의 확대를 바라고 있다.

後繼者事業은 좋은 制度로 확대, 실시가 요망된다는 비율은 <表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漁民後繼者에서는 73.4%, 一般漁民은 74.5%, 水産系 學生은 74.3%로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現規模로의 維持實施를 바라는 비율은 漁民後繼者 그룹에서 의외로 높아 21.7%나 되고, 一般漁民은 6.9%, 水産系 學生은 6.1%였다. 後繼者 育成事業은 少數人을 위한 特惠이므로 資金을 他事業에 전용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은 漁民後繼者에서는 1.1%, 水産系 學生은 2.1%에 불과하나, 一般漁民에서는 놀랍게도 13.7%나 되었다. 이는 물론 전체로 보아서는 少數 意見이나, 一般漁民의 이같은 질시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後繼者의 選定과 資金管理가 공정해야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의 규모확대에 대한 의견에서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漁民後繼者 자신은 3.8%, 一般漁民은 4.9%인데 비해 水産系 學生에서 17.5%로 높게 나타난 것은 評價意見を 보류했다기 보다는 後繼者 育成事業 자체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진다.

表 5-8 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의 規模擴大에 대한 意見

單位 : %

	漁民後繼者	一般漁民	水産系學生
擴大實施	73.4	74.5	74.3
現規模維持	21.7	6.9	6.1
資金他用途利用	1.1	13.7	2.1
잘 모르겠다.	3.8	4.9	17.5
合 計	100.0	100.0	100.0

나. 漁民後繼者의 年令制限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은 施行 初年度인 1981년 後繼者의 資格基準을 30세 이하로 제한했다가, 82년에는 그 上限線을 35세까지로 上向調整하여 현재 실시중이다. 이같은 年齡制限에 대해서 질문한 바, <表 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漁民後繼者 자신들은 현행 35세 이하의 制限維持에 52.7%가 찬성하고 있으며, 39.1%는 81년 수준인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表 5-9 漁民後繼者의 年齡制限

單位 : %

	漁民後繼者	一般漁民	水産系學生
25세 이하로 制限	3.3	3.0	10.8
30세 "	39.1	10.0	17.3
35세 "(現行制度)	52.7	30.0	21.3
40세 "	1.6	19.0	14.4
年令制限 廢止	3.3	38.0	36.1
合計	100.0	100.0	100.0

一般漁民은 38%가 年齡制限의 철폐를 바라고 있으며, 현행 35세 이하로의 制限은 30%가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40세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19%나 된다.

水産系學生들은 年齡制限 철폐를 36.1%, 35세 年齡制限을 21.3%, 30세 年齡制限에는 17.3%가 찬성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다수의 意見은 年齡制限을 두는 쪽이며, 기왕 年齡制限을 둔다면 여러 그룹에서 비교적 높은 찬성율을 보인 現行의 35세 이하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融資金 支援 규모

1982년 선정된 漁民後繼者에 대하여 개인에게는 800만원, 단체에게는 1,000만원의 融資金を 기준으로 총 151건에 총 13억원을 漁民後繼者 育

成事業에 책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개인에게 주는 融資金이 적어 自體資金의 投入이 없이는 웬만한 漁業이라도 손볼 수 없으므로, 1인당 融資金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현재까지 2년간 실시한 漁民後繼者 育成事業에 年間 選定規模가 150건 정도로, 이 또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事業의 중요성을 인식 못해서 年間 件數를 늘리지 않고, 또한 件當 融資規模를 늘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問題는 總融資金의 규모가 적으므로 확대 실시가 어렵다는 점이다.

總融資金의 규모가 약간 늘어날 경우, 後繼者數를 우선 늘려야 할지, 아니면 개인당 融資金 한도를 우선 적정수준으로 늘려서 지원해 주어야 할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 問項을 調査하였다. 앞으로 總融資金의 규모가 現水準 정도라고 가정할 때, 개인당 融資金을 줄이더라도 後繼者數를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意見에 찬성한 비율이 漁民後繼者 그룹에서는 단지 17.8%뿐이고, 一般漁民은 41.8%, 水產系 學生은 40.7%나 되었다. 한편 後繼者數를 줄이더라도 개인당 融資金을 적정규모로 늘려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意見에 대해서는 漁民後繼者는 48.1%, 一般漁民은, 24.5%, 水產系 學生은 32.7%가 찬성하였다. 나머지가 現行制度가 적당하다는 의견으로, 漁民後繼者는 34.1%, 一般漁民은 33.7%, 水產系 學生은 26.5%가 찬성하였다.

이로 보아 대체적으로 漁民後繼者는 개인 融資金을 우선 適正規模로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一般漁民과 水產系 學生은 後繼者數를 우선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融資金 償還期間

漁民後繼者로 선정되어 融資金 支援을 받을 경우 現行制度는 원칙적으로 3年 거치 4年 分割償還토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表 5-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漁民後繼者들은 현행 償還期間(7年)이 적당하다는 비율이 54.1%, 融資金 상환기간이 너무 짧으니 늘려야 한다는 비율이 45.4%이고, 償還期間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0.5%에 지나지 않았다. 一般漁民과 水產系 學生들도 償還期間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향은 漁民後繼者

表 5-10 融資金 償還期間

單位：%

	漁民後繼者	一般漁民	水産系學生
7年以下로 縮小	0.5	4.0	5.9
現行 7年이 適當	54.1	67.7	47.2
7年以上으로 延長	45.4	28.3	46.8
合 計	100.0	100.0	100.0

와 같이 현행제도가 적당하다고 보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償還期間 延長이고, 償還期間 縮小는 제일적은 순서로 되어 있다. 이로 보아 償還期間에 관한 현행 7년이 가장 부난하여 앞으로 손질하지 않아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 融資金의 一律的 償還에 대한 의견

融資金은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으므로 漁民後繼者들은 이를 의식하여 安定的 事業에만 치중하려는 경향을 띄게 되나 상당수의 調査對象者들이 이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表 5-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漁民後繼者의 경우, 새로운 漁法導入이나 養殖品種開發 등 위험부담이 따르는 事業의 경우는 事業失敗時 融資金을 상환하지 않아도 좋도록 해야 漁業이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에 37.5%가 찬성한 반면, 事業失敗는 개인 책임이므로 다음 世代의 後繼者를 위해 꼭 상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44.6%나 되어, 不償還 보다는 다소 높았다. 조건부일망정 不償還意見에 가까운 기타가 17.9%였으므로, 전체적으로

表 5-11 融資金의 一律的 償還에 대한 意見

單位：%

	漁民後繼者	一般漁民	水産系學生
事業失敗時 償還안 해도 좋음	37.5	27.3	62.6
다음 後繼者를 위해 꼭 償還	44.6	69.7	28.7
其 他	17.9	3.0	8.7
合 計	100.0	100.0	100.0

보아서는 경우에 따라 不償還의 制度的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이 개진한 기타를 요약하면 첫째, 事業失敗 정도에 따라 관계당국에서 엄정 조사 후 適正額減免, 둘째, 事業失敗時 元金만 상환, 셋째, 위험부담이 있는 事業의 失敗時에 일단 상환케 한 후 再融資의 혜택을 주라는 내용 등이다.

一般漁民은 事業失敗時 融資金 不償還에 27.3%만이 찬성하고, 事業失敗와 관계없이 꼭 상환해야 한다는데 69.7%란 다수가 찬성함으로써, 기타 3.0%를 감안하더라도 漁民後繼者와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水産系 學生은 새로운 漁法, 品種開發등의 진취적 의욕이 앞서서인지 事業失敗時 不償還에 62.6%가 찬성하고, 어느 경우건 꼭 상환해야 한다는 데는 28.7%, 기타에 8.7%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事業失敗時 상환 안해도 좋다는 데는 水産系 學生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꼭 상환해야 한다는 데는 一般漁民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에 반해, 직접적 利害當事者인 漁民後繼者는 중도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바. 水産系 學校 卒業生에 대한 後繼者選定 優先權 賦與問題

水産系 學校 卒業生은 學校生活를 통해 다년간 진보된 水産技術을 습득하였고, 의욕도 높으며, 學歷도 일반 漁村靑少年 보다는 높은 편으로 후일 漁村指導者로서의 資質도 갖추고 있으므로, 이들이 漁村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卒業生 自身은 물론, 水産系 學校의 活成化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水産系 學校에서는 그들의 卒業生에 대한 漁民後繼者選定에 優先權을 부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바대로 水産系 學生들은 優先權賦與에 전폭적으로 찬성(85.1%)하고 있으나, 漁民後繼者와 一般漁民들은 贊反意見이 비슷하였다 <表 5-12>.

漁民後繼者는 水産系學校 卒業生에게 優先權을 주어야 한다는데 35.1%, 다른 漁村靑少年과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데 30.8%, 그리고 水産系 學校 졸업생은 技術, 學歷 등의 資質로 보아 마음만 먹으면 漁村에 정착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一般漁村靑少年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意見이 34.1%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一般漁民의 반응은 水産系 學校 졸업생에 優先權 부여가 41%, 모든 靑少年 同一待遇가 22.0%, 漁村靑少年 우선권 부여가 37.0%이었다.

表 5-12 水産系學校 卒業生の 後繼者選定 優先權 賦與

單位：%

	漁民後繼者	一般漁民	水産系學生
優先權을 주어야 함	35.1	41.0	85.1
다른 靑少年과 同一 대우	30.8	22.0	8.9
漁村 靑少年에 優先權 賦與	34.1	37.0	6.0
合 計	100.0	100.0	100.0

사. 漁民後繼者 事業 이외의 要望 事業

漁村에 능력있는 靑少年을 정착시킴으로써 漁村을 활성화하고 沿近海 및 養殖漁業을 진흥시키기 위해 막대한 支援金을 들여가며 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을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면서 支援金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方案은 없을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事業이 있을까? 이에 대하여 調査對象者를 통해 의견을 들어 보았다.

이에 대하여 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漁民後繼者들은 79.3%, 一般漁民은 70.0%, 水産系 學生은 89.8%가 찬성하였다. 이로 보아 後繼者 育成事業 자체는 훌륭한 사업임을 調査對象者들은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부 意見이지만 後繼者 育成事業보다 더 중요한 사업으로 特定人에 대한 事業보다 多數를 위한 技術支援을 통한 高所得 유도, 融資金支援보다는 漁場을 확보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 漁村에 文化施設, 도로포장, 工場建設, 優秀專門人 배출을 위한 水産大 증설 등을 바라고 있었다.

第6章

앞으로의 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의 推進方向

1. 基本推進方向

가. 長短期的 漁業勞動力 需給計劃에 의거한 事業推進

앞으로의 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은 長短期 漁業勞動力 需給計劃을 樹立하고 이에 의거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 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은 나름대로 長短期計劃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겠으나 事業자체가 전체 漁業勞動力 需給均衡을 이루고자 하는 勞力의 일환임을 생각할 때 전체로서의 漁業勞動力 需給計劃에 의거하여 本事業을 추진해 나가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漁業勞動力 需給計劃의 수립에는 외부에서 漁業勞動力을 흡수하는 要因(pull factor), 漁村 자체의 문제로서 漁村에서 漁業勞動力을 排出하는 要因(push factor), 人口成長率, 漁業에 있어서의 省力化 정도 및 기타 社會經濟的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營漁後繼者 및 專業者 중심의 事業推進

漁業勞動力으로서 經營者(營漁者)는 물론 被傭者도 중요하다. 그러나 금

후 환경여건의 변화로 보아 漁民後繼者의 育成은 經營者로서의 營漁後繼者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즉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최근 漁業人口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國民人口와 所得의 증가로 水産物에 대한 需要는 점차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水産物 需要를 충족하고 아울러 水産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漁業生産性의 향상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被傭者보다는 經營者로서의 漁民後繼者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앞으로의 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은 營漁後繼者와 더불어 專業者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 漁業從事者의 構成比는 專業者보다 兼業者가 훨씬 많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漁業이라는 産業 자체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他分野 勞動者들의 所得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漁業外所得의 추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어쩌면 바람직한 것일 지도 모르는) 현상이며, 日本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勞動力構成의 취약화 즉 老齡化와 동시에 야기된다면 漁業生産性 向上내지 水産業의 지속적인 발전에 큰 마이너스의 인 要因이 되므로 앞으로의 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은 專業者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 水産大學 및 水産專門大學長의 推薦制度 擴大

1982년부터는 邑面 → 市郡 → 市道의 과정을 거쳐 農漁民後繼者를 선정하는 외에 이와는 별도로 水産大學 및 水産專門大學長의 추천에 의해서도 農漁民後繼者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1982년에 漁民後繼者의 경우 水産大學 및 水産專門大學長의 추천에 의해 선정된 자는 실제로 한 명도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事業推進機關으로서 두 가지의 다른 경로를 통해 後繼者를 선정함으로써 관리상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겠으나 학교의 學長 추천에 의한 後繼者 選定은 우수한 후계자 확보를 가능케 하고 水産系

學校의 학생들이 자기 전공에 대한 의욕을 높일 뿐만 아니라 學校教育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므로 앞으로 學長推薦으로 인한 後繼者 選定の 기회를 점차 확대하여 이를 통해 더 많은 後繼者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事業內容의 改善方向

가. 後繼者 選定の 改善方向

1) 事業基盤 규모와 後繼者 選定

1981, 1982년 兩年度에 漁民後繼者로 지정된 자들 중에는 어느 정도의 事業基盤을 가지고 漁業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현재 자립 단계에 있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의 지원만 해주면 자립가능한 자가 있고, 자기소유 漁業施設이나 자금동원 能力이 극히 미약한, 즉 事業基盤을 거의 갖추지 못한 자들도 있다.

그런데 한정된 育成基金으로써 이들 모두에 대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다시 말하면 事業基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른 자들은 정책자금으로서의 育成基金을 별도로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漁業에 종사할 것이므로 育成基金을 지원해 주는 것이 그들의 資金事情이나 士氣振作에 다소의 도움은 주나 전체 자금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분만큼 다른 대상자들의 몫이 감소하므로 새로운 後繼者의 定着이라는 점에서는 그 효과가 감소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本事業은 현재 자립단계에 있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의 지원만해주면 자립가능한 자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사업기반을 거의 갖추지 못한 需細漁家 출신자에 대해서는 兼業漁家로서 지원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들에 대해서는 기술지도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2) 事業選定 過程의 改善方向

(가) 後繼者 推薦의 公正化 : 漁民後繼者 대상자를 추천하는 邑面 事

業推進委員會 委員들의 水産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地緣, 血緣 등의 정실에 치우침으로써 공정한 추천이 저해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漁民後繼者를 추천하는데 있어서 事業推進委員會의 委員들에 대하여 水産에 관한 예비지식을 제공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委員들 자신은 스스로 정실에 얽매이지 않는 공정한 자세로 後繼者의 추천에 임해야 할 것이다.

(나) 事前弘報強化 : 後繼者들 중에는 後繼者育成事業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선정된 자들도 있는데, 이렇게 漁業에 대해 확고한 신념이 없는 자들이 선정됨으로써 선정후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漁村의 靑少年들에게 本事業에 대한 事前弘報를 강화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자기가 하고자 하는 漁業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스스로 선정하게 하여 본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선정된 後繼者들이 事業을 계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父母 및 주위의 협조도 중요한바 신청시에 이들의 의견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다) 脫落者에 대한 배려 : 脫落者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準備課題 資金 支援 및 營漁資金의 우선지원이 필요하다. 즉 지역에 따라서 後繼者 신청자가 상당히 많아 선정에 경합이 심한 곳도 있고, 그다지 심하지 않은 곳도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많은 신청자가 脫落되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士氣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는 어떤 일련의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

현행제도에서도 市郡에서 候補事業 대상자 및 탈락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어활동 상황을 관찰토록 하고 次年度 事業對象者 추천시 참조토록 하며 특히 이들에 대하여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계몽을 철저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더하여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다소의 준비과제자금을 지원하고 水協의 영어자금 융자 등에 우선권을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나. 融資事業의 推進方向

1) 事業資金 適期放出

현재 후계자로 선정된 자들에 대해 分期別로 자금을 배정, 대출하고 있는데 그 결과 사업착수전에 소요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

우가 많다. 따라서 금후 현행 방법과 같이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 용자하되 분기별 책정금액을 어업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후계자 개인별로 자금사정이 제각기 다르므로 필요한 경우 專擔指導員의 의견을 들어 分期別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방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용자시 각 개인별로 작성해야 하는 제반 서류도 극히 필요한 것만 먼저 제출케 하고 나머지는 대출 후 사후에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금을 적기에 방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필요한 경우의 追加支援

어업을 自營합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며 더구나 자기자본 동원능력이 미약한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자금부족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漁民後繼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일정한 자금을 지원받았다 할지라도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自然災害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추가자금이 필요하게 되며 실제로 현재 어민후계자로 지정된 자들 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금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각 事業推進委員會 또는 協議會의 심의를 거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3) 品種別 償還期間의 선별적 연장

현재 後繼者 育成基金의 融資期間은 品種에 관계없이 모두 3年 据置 4年 分割償還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本事業을 담당하는 主體로서는 사업관리상 편리한 점이 많으나 후계자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어떤 어업에서는 사업착수부터 상품화 할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품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어업에 따라서는 그다지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품종도 있다. 따라서 모든 후계자들에게 비슷한 상품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착수 후 상품화까지의 기간이 긴 어업은 용자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 保增人資格의 改善

현재 漁民後繼者로 선정된 자들이 事業資金을 대출받을 때 1年 財産稅

納付實績이 5천원 이상인 자 2명 이상을 連帶保證人으로 세워야 하는데 실제 후계자들이 이러한 資格을 갖춘 保證人의 보증을 받기란 그리 쉽지는 않다. 따라서 금후 가능하다면 財産稅 納付實績 金額基準을 낮추든가, 아니면 財産稅 納付實績이 5천원 미만의 자들이라 할지라도 다수를 保證人으로 세움으로써 현재의 保證人의 財産稅 納付實績의 最少值가 1만원(5천원×2명) 수준까지 확보할 수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教育 및 指導의 推進方向

1) 教育 및 指導機會의 擴大

현재 후계자에 대한 教育 및 지도는 후계자로 확정된 후 실시하는 精神 教育과 專門技術教育, 專擔指導員을 통한 經營 및 技術指導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後繼者들이 漁閒期 중에 後繼者 선정 후 教育받은 것과 같은 집중적인 教育을 年 1回 정도만이라도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평소 학교 卒業 後 기술교육 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식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의 발로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금후 水產專門大學같은 곳에서 一般漁民들은 위한 教育 실시 및 漁村靑少年들을 대상으로한 技術教育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漁民後繼者들에 대해서는 年 1회 정도만이라도 精神教育과 最新技術教育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水產技術誌등을 통한 水產情報의 제공과 漁民後繼者들의 養殖 및 漁船漁業 先進地 견학기회의 확대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指導員의 指導充實化

많은 후계자들이 專擔指導員들의 지도 내용이 너무 이론적이며 충실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의 지도원이 2명의 후계자를 겸임지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 어민들의 지도까지 담당해야 하므로 후계자 개개인에 대해 충실히 지도를 할 수 없고 간혹 지도원 자신이 그가 지도해야 하는 분야에 대해 깊이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指導員을 증원하여 업무량을 줄이고 가급적이며 指導員의 전공분

아예 맞추어 후계자를 지도케 하고 指導員을 水産系學校에 委託하여 教育을 실시하거나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지도원의 자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後繼者들의 一般漁民 指導資格부여

어민후계자들 중에서는 그들 보다 기술수준이 낮은 一般漁民들을 지도하고 海洋汚染 및 不正漁業의 圍束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자들도 많은데, 이러한 경우 一般漁民을 지도하거나 해양오염 및 부정어업을 단속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국가에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실제 지역사회에도 다소의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후계자 스스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한다는 긍지를 갖게 함으로써 이들의 漁村 定着效果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事業推進與件의 造成

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이 시작된 지는 이제 2년에 불과한데 앞으로 本事業을 정착 내지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事業施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은 물론 事業推進에 있어 필요한 與件을 조성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가. 漁村 漁業 및 漁民에 대한 經濟的 社會的 保障策 研究

漁業人口가 漁村에서 유출되는 것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므로 이를 방지하거나 유출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解決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漁村, 漁業 및 漁民의 상호의존적인 성격과 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經濟的, 社會的인 보장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장책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첫째, 漁村이 생활장소로서 어느 정도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즉 도로, 통신망, 의료시설들을 확충하여 생활에 불편을 줄이고 학교수를 늘림으로써 漁村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漁業 자체에 대한 보장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漁業은 그 사업의 특성상 생산물의 풍흉이 대단히 심하고 따라서 가격의 騰落 또한 매우 심하므로 災害補償制度和 같은 災害에 대한 대응책과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漁業은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이 대단히 열악하므로 이의 개선을 위한 諸對策의 강구도 요망된다.

셋째, 漁民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보장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漁民所得增大策으로는 水産物에 대한 價格支持政策 및 流通構造의 개선, 주된 漁業 이외의 漁業개발을 위한 複合營漁의 지원, 漁閒期를 이용한 漁業外 所得源 증대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고 있는 각종 保險을 실시토록 하고, 일선 漁政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漁民들의 자체적인 經濟組織(協組 등)을 자율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漁業의 기본정책이 자주 변경됨으로써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어민들 자신들도 직업으로서의 漁業意識을 바꾸어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漁業에 대한 경시풍조가 불식되어야 한다.

나 現行漁業 制度의 改善

최근 어업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離漁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機械化, 漁具·漁法の 개량으로 대변되는 漁業勞動의 省力化와 경영규모의 적정 한도 내에서의 大型化로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경영규모의 大型化를 위해서는 漁場의 확보에 流動性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의 제도상으로는 그렇지가 못하다. 즉 漁場에 대한 免許는 原則적으로 移轉과 貸付가 금지되어 있고 新規免許나 許可를 취득하기도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漁場確保의 流動性이 대단히 낮다. 그리하여 漁業에 종사하고 싶어도 漁業을 할 수 있는 漁場과 法的資格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他人經營漁業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漁村을 등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것은 물론 한정된 漁場에 많은 사람이 종사한다는 점이나 對象資源의 상태를 고려할 때, 그럴 수밖에 없을 지도 모르나 免許나 許可만 받아 놓고 거의 休業상태에 있거나 養殖場의 경우 소수인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지역을 독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앞으로 免許, 許可漁業에 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 休業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 免許, 許可를 취소하고 정말로 當該漁業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행사케 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양식업의 경우 養殖場免許의 上限線을 정하여 同一인이 일정면적 이상을 소유할 수 없게 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上限線의 설치 는 진실로 能力과 의욕이 있는 자가 그의 경영기반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의욕을 감퇴시킬 수도 있으나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漁村에 정착하여 어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 그 정당성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휴업상태에 있는 免許, 許可의 재분배와 養殖場의 上限線 설치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들 免許, 許可의 所有와 실제 行使관계의 정확한 파악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다. 漁家 자체의 後繼者 育成努力

漁民後繼者の 育成은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또는 정부의 정책사업에 의해 행해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漁家 스스로의 힘으로 後繼者를 육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漁業에 종사하고 있는 漁民의 입장에서 그의 後繼者는 지식, 친척 기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 등이 될 수 있으나 그들로 하여금 漁業에 종사케 하려면 그들 스스로 漁業에 종사하려는 자발적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漁民으로서 그의 後繼者 대상자들이 漁業을 하려는 의욕을 북돋워 줘야 하며 이들로서는 가급적이면 外部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져야 한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들 후계자 대상자들이 실제 어업을 경영하려는 단계에 있어서는 의타심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支援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4. 기타 漁民後繼者 育成 活動의 推進方向

本研究의 中心課題가 되고 있는 漁民後繼者 育成事業과 本事業과는 별도로 장래에 漁業에 종사하고자 하는 靑少年, 즉 광의의 漁民後繼者를 육성하고자 하는 活動 사이에는 代替的인 관계도 있으나 補完的인 성격이 더욱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補完的인 效果는 漁民後繼者 育成事業 이외의 後繼者育성을 위한 諸活動이 어느 정도의 水準에 있을 때 더욱 커질 수 있는 바, 금후 이들에 대한 支援強化 및 活性化는 이들 고유의 目標達成은 물론이고 漁民後繼者 育成事業 자체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가. 水産系學校의 推進方向

1) 教育의 專門性 強化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 水産系學校를 증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그 專門性을 강화하여 水産系學校로서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教育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漁業과 漁村의 역할을 바르게 인식시키고 이해할 수 있도록 教育過程이나 教育方法을 개선해야 하며 특히 實習時間을 확대하고 實習施設과 實習資材의 확충을 통해 實習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學敎에서는 營漁學生會(假稱)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2) 水産系學校에 대한 支援強化

水産系學校에 대한 支援으로는 위에서 살펴 본 實習施設이나 資材 외에 校舍, 寄宿舍 등 학교 전반적인 施設에 대한 확충도 필요하다. 또 敎師들에 대한 實科手當을 工高水準 정도로 인상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방학을 이용하여 教育 및 練修機會를 확대하여 自質向上에 힘써야 한다.

한편 學生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擴大支給하고 특히 女學生들에게도 문

호를 개방하여 앞으로 女姓 漁民後繼者 대상자로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社會教育 推進方向

1) 沿岸地域 새마을靑少年會의 活性化

현재의 여건으로 볼 때 漁民後繼者를 위한 社會教育으로서는 沿岸地域에 위치하고 있는 새마을 靑少年會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沿岸地域 새마을 靑少年會가 漁民後繼者 육성이란 역할을 담당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會員에 대하여 漁業에 관련한 課題資金支援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靑少年을 대상으로 한 指導事業實施

현재 이론에 있어서의 指導事業은 水産振興院 系統組織에서 주관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指導人力의 부족으로 一般漁民들을 대상으로 한 지도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며, 靑少年들만을 대상으로 한 指導事業은 전무한 실정이다.

漁村의 靑少年들이 漁業에 뜻이 있어 종사하고 싶어도 선뜻 하지 못하는 근본원인이 資金과 技術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들에 대한 技術指導는 漁民後繼者 육성이란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 어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技術指導를 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水産振興院에서 그 기능을 담당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 漁民團體의 活性化

漁民團體를 활성화시켜 漁村의 靑少年들로 하여금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는 것도 漁民後繼者의 육성을 위한 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漁民團體로서는 水協과 自生組織으로서의 漁村靑少年會 등이 있다. 먼저 水協에 있어서는 현재 정책사업으로서의 漁民後繼者 育成事業 育成基金 勇자창구로서의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는데, 금후 漁村靑少年들을 위한 지도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水協의 靑少年들을 위한 指導는 그 기능에 있어서 앞에서 말한 청소년들을 위한 지도조직의 그것과 중복이 되

어서는 안된다. 즉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 앞에서 말한 지도조직에서는 技術指導를 주로 담당하는 것이 좋겠고 水協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經營指導部門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편 漁村靑少年들의 自生組織으로서 漁村靑少年會 등은 漁村靑少年으로서의 힘으로 설립,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이러한 단체를 통해서 漁村靑少年은 스스로를 개발, 발전시켜 나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이의 조직을 적극권장할 필요가 있다.

4) 產學協同體制의 強化

漁民後繼者의 育成을 위해서는 水產系學校의 지도인력과 실습시설을 이용하여 水產系學校를 卒業하지 않은 어업지망 청소년들이나 水產系學校를 卒業했다 하더라도 계속 교육을 바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品種別로 漁聞期에 단기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론 및 실습교육을 병행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 사정이 되면 이에 대한 교육비를 정부에서 부담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나 그렇지 않을 때는 피교육자가 자기부담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사들은 교사대로 漁村의 一般靑少年에 대한 指導員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되 이때 소요되는 經費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어야 한다.

〈附 錄〉

어민후계자 육성사업에 관한 설문조사

I. (어민후계자용)

1. 귀하의 주소는 _____ 시·도 _____ 시·군 _____ 동·읍·면
2. 귀하의 연령은 _____ 만 _____ 세
3. 귀하의 학력은 _____ 학교 _____ 과 재학중, 중퇴, 졸업.
4. 귀하의 가족 수는(귀하를 포함하여) _____ 명
5. 귀하의 집안은 조상때 부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의 ()안에 0표 하십시오.
 증조부 이전부터 수산업에 종사했다고 알고 있다.
 할아버지때부터 수산업에 종사했다고 알고 있다.
 부모님때부터 수산업에 종사했다.
 본인대에 처음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공부하고 있다.
6. 귀댁의 경제적 수준은 마을에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아주 잘 사는 편이다.
 좀 잘 사는 편이다.
 마을의 평균 수준이다.
 좀 못사는 편이다.
 아주 못사는 편이다.
7. 귀댁의 작년 연간 소득액은 얼마였습니까?
 총 소득액 _____ 만원
 어업소득액 _____ 만원
 농업소득액 _____ 만원
 상업소득액 _____ 만원
 근로임금소득액 _____ 만원
 기타소득액 _____ 만원
8. 우리 나라 수산업의 전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전망이 밝다.
- ()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일 것이다.
- () 전망이 어둡다.

9. 도시에 사는 것이 불편지 않다고 생각되려면 어촌에서 연간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간 _____ 만원

10. 수산업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 두가지만 골라 0표 하십시오.

- () 자금 부족 () 어촌에 정착해야 하기때문
- () 기술 부족 () 잘 살 가능성이 없다.
- () 노동력 부족 () 어업자원 고갈
- () 수질오염 () 주위 사람들의 천시
- () 판로 및 가격문제 () 세금 및 법률문제
- () 기 타 _____

11. 수산업을 계속해야 된다면 앞으로 하고 싶은 어업의 종류나 양식대상 품종은?

_____ 어업 _____ 품종

12. 귀하의 어업기반은? 귀하의 소유는 물론 앞으로 귀하의 것으로 상속될기 반까지 포함하여 어느정도 소유하고 있습니까?

- () 전혀 없다. () 있다.

있다면 아래 사항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어업종류 및 규모	현재 귀하의 소유로 되어 있는 어업기반	현재는 부모형제의 소유 이나 장차 귀하 소유로 예상되는 어업기반
어선어업 { 어업종류 { 척수 및 톤수		
양식어업 { 양식 품종 { 면허 면적		
기 타 { 종묘배양장규모 { 가공시설규모		

- () 후계자 수를 줄더라도 개인용자금을 적정규모로 늘려주어야 한다.
- () 현행 제도가 적절하다.
20. 어민후계자 용자금은 원칙적으로 3년거치 4년분할 상환(총 7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 () 용자금회수 기간이 짧으니 7년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 () 용자금회수 기간이 길므로 7년이하로 줄여야 한다.
- () 현행제도가 적당하다.
21. 용자금은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으므로, 어민 후계자는 안정적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 () 새로운 품종개발 등 위험부담이 따르는 사업의 경우는 사업실패시 상환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야 수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 () 사업 실패는 개인 책임이므로 다음 세대의 후계자를 위해 꼭 상환을 해야 한다.
- () 기 타 _____
22. 수산학교 졸업생에게는 어민후계자 선정에서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 () 다른 어촌 청소년과 똑 같이 대해야 한다.
- () 수산계학교 졸업생은 마음만 먹으면 어촌에 정착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일반 어촌 청소년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23. 어민의 어촌 정착을 위해 어민후계자 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어민후계자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
- () 어민후계자 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은?

24. 귀하의 병역판계는?
- () 필 () 미필
- () 방위 () 면제
25. 귀하가 지금까지 종사한 수산업의 업종과 종사년수는?
_____어업 _____년
_____어업 _____년
26. 귀하가 갖고 있는 어업관계 자격증이 있다면 종류와 급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시요

() 없다. () 있다.

있다면 종류와 급수는? _____

27. 귀하가 현재 보고계시는 수산관계 간행물은?

() 새어민 () 이달의 수산메모

() 한국수산신보 () 수산기술지

() 농수산신보 () 현대해양

() 기 타 _____

28. 귀하가 과거 가입한 적이 있거나 현재 가입하고 있는 수산관계 단체는?

() 수협 () 새마을 청소년회 () 어촌계 () 기 타

29. 귀하가 수산업에 종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상때 부터 전해 내려오는 직업이기 때문에

() 잘하면 다른 직업보다 소득을 높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 수산업 이외에는 별다른 기술이 없기 때문에

() 수산계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 수산업이 다른 직업보다 재미가 있고 보람도 있다.

() 기 타 _____

30. 귀하는 앞으로 수산업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 평생 계속하겠다.

() 기회가 생기는 대로 그만두겠다.

() 곧 그만 두겠다.

31. 어민후계자에게 어업면허나 허가를 우선하여 내주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면허나 허가가 사전에 없더라도 어촌 정착 의사가 뚜렷한 청소년이면 어민후계자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면허나 허가가 없는 사람은 후계자로 선정되면 후에 결국 면허나 허가를 내주어야 하므로 이런 사람은 후계자로 선정되어서는 안 된다.

32. 위의 면허, 허가문제에 대한 귀하의 특별한 의견이 있다면?

33. 귀하는 몇년도에 어민후계자로 선정되었습니까?

() 1981 년 () 1982 년

34. 귀하가 어민후계자로 선정된 사업명은?

어업명 _____

어업규모 _____

총 자금소요예상액 _____ 만원

35. 어민후계자는 개인자격입니까, 단체자격으로 선정되었습니까?

() 개인 () 단체

36. 개인자격으로 선정되는 어민후계자와 단체자격으로 선정되는 어민후계자를 비교할 때 다음 항목별로 어느쪽이 유리할 것 같습니까? 유리한 편에 0표하여 주십시오.

항 목	개인자격편이 유리하다	단체자격편이 유리하다
자 금 동 원		
생 산 기 술		
어 선, 어 장 관 리		
생 산 물 판 매		
이 익 배 당		
기 타 ()		

37.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을 변경하고 싶으십니까?

- () 순조롭게 진행되므로 지금 사업을 계속하겠다.
- () 전망이 별로 없지만 변경하지 않고 계속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 () 가능하면 당장 새 사업으로 변경하고 싶다.

38.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잘 안된다면 그 이유는?

- () 면허, 허가처분의 미취득
- () 과잉생산에 따른 여가 불안
- () 자금부족
- () 기 타 _____

39. 지금의 면→군→도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어민후계자 선발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현행제도가 좋다.
- () 군(시)에서 최종확정 했으면 좋겠다.
- () 면(읍)에서 최종확정 했으면 좋겠다.
- () 기 타 _____

40. 어민후계자로 선발된 후 받으신 정신교육, 기술교육에 대해 느끼신 점은?

- () 별로 도움이 안되므로 없애는 것이 좋겠다.

- () 령 제도정도의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 교육기간이 너무 짧으므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 기 타 _____
41. 용자금 기준 개인 800 만원, 단체 1,000 만원에 대해서 귀하의 경우는?
- () 부족하다.
- () 그 정도면 되었다.
- () 너무 많다.
42. 어민후계자로 선정되어 받으신 용자금은?
- 당초 신청액 _____ 만원
- 확 정 액 _____ 만원
- 현재까지 받은 용자금 액수 _____ 만원
- 현재까지의 자담액 _____ 만원
- 현재까지의 수지상황 _____ 만원
43. 용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 () 적기에 일시적으로 용자를 받았다.
- () 적기에 주나 여러번 나누어서 용자금을 주고 있다.
- () 사후에 주나 일시에 용자금을 받았다.
- () 사후에 그것도 여러번에 나눠서 용자금을 주므로 애로가 많다.
44. 귀하는 용자금을 받은 후 몇년만에 전액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_____ 년 이내
45. 귀하가 세운 두사람 이상의 연대 보증인은 다음중 누구입니까? 보증인수 대로 0표 하십시오.
- () 부모 ()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 () 친구 () 마을유지
- () 어촌계장 () 친척
- () 수협임직원 () 선배
- () 형제 () 기타
- 총 _____ 명
46. 연대보증인 제도를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 () 현행제도가 적당하다.
- () 연대보증인 수를 늘리더라도 보증인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 () 연대보증인 수를 1 사람으로 줄이고 대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47. 연대보증인 제도에 대하여 귀하의 특별한 의견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48. 어촌지도원의 지도가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약간 도움이 되고 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 타 _____

49. 어촌지도원의 지도가 도움이 안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론적으로만 지도를 하여 실제 어업에 활용이 안 된다.
 지도원들이 실제로 수산경험이 부족하다.
 별로 성의가 없는 것 같다.
 기 타 _____

50. 어민후계자 영어일지 기록에 대해서

- 꼭 기록해야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
 기록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에 쫓겨 제대로 기록이 안 된다.
 내용이 어려워 기록에 지장이 많다.
 잘 기록하고 있다.
 기 타 _____

51. 귀하는 어민후계자로 선정될 당시 현재하시는 어업에 대한 면허, 허가처분을
을 받고 계셨습니까?

- 선정될 당시 면허, 허가를 갖고 있었다.
 선정된 후에 면허, 허가처분을 받았다.
 아직 면허, 허가처분을 받지 못하고 어업을 하고 있다.
 면허, 허가처분과 관계없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52. 귀하와 어촌계와의 관계는?

- 원만한 관계이다.
 별 접촉이 없다.
 관계가 좋지 않다.

53. 어민후계자로 선정된후 지역주민의 반응은?

- 선정되기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선정되기 전이나 후나 별로 변한 것 같지가 않다.

() 선정된 후 질시하는 것 같아 괴롭다.

54. 어민후계자의 사기진작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5. 현행 어민후계자 사업이 개선되어야 할 점을 간단히 조목별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II. (일반 어민용)

1 ~ 32. 어민 후계자용과 동일

33. 어민후계자로 지정 된 사람을 볼때 느끼는 감정은?
 부럽다.
 무슨 특권이나 얻은 듯하여 아니꼬운 생각 초차 든다.
 실제로 뽑혀야 될 사람은 안뽑히고 별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뽑히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아무런 느낌도 없다.
34. 귀하는 어민 후계자로 지정되면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까?
 틀림없이 성공할 자신이 있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별로 자신이 없다.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
35. 어촌지도원의 지도를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받아 본 적이 없다.
 받아 본적이 있다.
 있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도움은 커녕 엉뚱한 지도를 하여 손해를 보았다.
36. 어촌지도원의 지도가 도움이 안된다면 그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론적으로만 지도를 하여 실제 어업에 활용이 안된다.
 지도원들의 실제 수산업 경험이 부족하다.
 별로 성의가 없는 것 같다.
 지도원의 부족으로 자주 만나볼 수가 없다.
 기타 _____
37. 기타 어민후계자 사업에 대해 느끼신 점이나 개선점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

Ⅲ. (수산계 학생용)

1 ~ 23 어민후계자용과 동일

24. 수산계 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는?

- ()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 가족, 친척등의 권유에 의해서
 () 주변에 위치한 학교가 수산계통뿐이라서
 () 기타 _____

25. 귀하는 수산계 학교 학생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 긍지를 느끼고 있다.
 () 적성에는 맞으나 장래성이 없는것 같아 불안하다.
 () 적성에도 안맞고 다른 계통학교에 전학했으면 좋겠다.

26. 졸업후 수산계통으로 진출하시겠습니까?

- () 수산계 직장을 얻고 싶다.
 () 수산업은 하되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
 () 다른 사업 계통으로 나가겠다.
 ()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싶다.
 () 기타 _____

27. 졸업후 수산계통으로 진출하지 않는다면 그이유는?

- () 수산업에 흥미가 없어서
 () 수산업을 해서는 돈을 벌수가 없기 때문에
 () 수산업을 하고 싶지만 수산업에 필요한 자본이 없어서
 () 어촌 생활이 싫어서
 () 수산계통회사에 취직이 어려워서

28. 학교에 대하여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29. 어민 후계자로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 () 꼭 후계자로 되고 싶다.
 () 되어도 좋고 안되어도 상관없다.
 () 어민 후계자가 되고 싶지 않다.

30. 기타 어민후계자 사업에 대해 느끼신 점이나 개선점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參考文獻 및 資料

1. 孔龍植, 「漁業經營에 있어서의 後繼者養成에 관한 研究」, 韓國水產經營學會 水產經營論集, Vol X111 No. 1, 1982
2. 李庸煥, 「日本の 農業後繼者 養成活動」, 서울大學校, 農學研究 Vol 5, No. 1, 1980
3. 金東一外 2人, 「營農後繼者 育成方案(새마을 靑少年會의 活性化를 中心으로)」,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報告 11, 1980. 6
4. 金東熙外, 「轉換期の 韓國農業」, 「韓國農村經營研究院 研究叢書 1, 1979
5. 金大泳, 李孝求, 「우리나라 人口移動의 特徵」, 韓國開發研究院 1976
6. 朱尤一, 「沿近海漁業의 改善方向」, 韓國農村經濟研究院, 政策協議會 시리즈 9, 1981
7.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農業開發研究所, 韓國農業教育學會, 「農漁民 後繼者 育成세미나 報告書」, 1980
8. 經濟企劃院, 「韓國統計月報」, 1982, 7
9. 農協中央會, 「日本 農業後繼者育成的 成果와 展望」, 農協調查月報, 1978. 10月號
10. 農水產部, 「1980 第2次 總漁業 調查報告」, 1982
11. _____, 「水產統計年報」, 1981
12. _____,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 實施要領」, 1982
13. _____, 「農漁民後繼者 및 事業計劃」, 1981, 1982
14. 水產廳, 「漁民後繼者 育成事業 推進狀況簿」, 1981
15. _____, 「1970 第1次 總漁業 調查報告」, 1972
16. _____, 「水產行政基本資料」, 1982
17. _____, 「漁民後繼者 教育 및 指導要領」, 1981. 1982
18. _____, 「水產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1982
19. 水協中央會, 「農漁民後繼者 育成基金 融資取扱要領」, 1982

20. _____, 「漁村契名簿」, 1980
21. 韓國水産振興會, 「水産年鑑」, 1980. 1981
22. 國立水産技術訓練所, 「1982年 教育訓練計劃案内」(農漁民後繼者養成過程), 1982
23. 「統營水産專門大學要覽」, 1982 ~'83
24. 「麗水水産專門大學要覽」, 1981 ~'82
25. 「南海水産高等學校, 教育計劃書」, 1982
26. 「注文津水産高等學校, 學校要覽」, 1982
27. 「莞島水産高等學校, 教育計劃」, 1980
28. 田口後郎, 折原俊二郎, 「農業青年研修教育の 課題と 方向」, 筑波書房.
29. 長谷川彰, 「第6次 漁業センサス分析日本漁業の構造」, 農林統計協會.
30. 農林統計協會, 「昭和 56年度 圖說 漁業白書」, 1982